# 일본 저출산 극복 세제의 시사점을 통한 우리나라 세제 개편방안 연구\*

김 병 일\*\*

寸	^[ I
I. 머 리 말 ·································	<ol> <li>일본과 한국의 저출산 극복 세제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li> </ol>
1. 저출산 현황 2. 저출산 원인 3. 저출산 대책	V.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 개편방안 ····································
Ⅲ. 일본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 23 1. 소 득 세 2. 법 인 세 3. 소 비 세 4. 상속세 및 증여세 5. 지 방 세	증여세 비과세 2. 상속시정산과세제도 3. 배우자공제 및 배우자특별공제 4. 특정부양공제 5. 임금인상촉진세제 6. N분N승 방식 7. 지 방 세
IV. <b>일본의 저출산 극복 세제의 시사점</b> ······· 46 1. 일본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개편 논의사항	8.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원확보 VI. <b>맺음 말</b> 61

<sup>\*</sup>본 논문은 2024. 8. 27. 『세무와 회계 연구』 특집주제 원고모집 지원에 의해 연구 되었다.

<sup>\*\*(</sup>전) 강남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sup>\*\*\*</sup> 투고일: 2024. 9. 30. 1차수정일: 2024. 10. 22. 게재확정일: 2024. 11. 8.

#### <국문초록>

저출산은 인구학적 요인과 함께 사회·경제적 요인, 문화·가치관 측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부터 2023년 까지 무려 379.8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택, 양육, 교육 및 세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도입되고 있거나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세제 중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만한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초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인 고용·주거·양육에 대한 기초적인 여건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일본의 경우와 같이 결혼·양육자금, 교육자금 및 주택취득자금등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 리의 경우 2024년에 도입된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액을 통합한도 1억원에서 혼 인, 출산 각각 1억원으로 증액하였으면 한다.

둘째,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18세 이상의 자녀·손자에 대한 생전증여에 대해 자녀·손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일본의 상속시정산과세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2,500만엔(2억 2,923만원)까지의 증여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 경감세율 20%로 증여세가 부과되며, 그 증여세는 상속 시 상속세액에서 차감된다. 동 제도의 활용을 통하여 조기에 결혼비용 확보는 물론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이를 적절히 활용할경우 혼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일본의 배우자공제는 일률적으로 150만원이 지급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공제를 받는 납세자 본인의 합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적용요건인 공제대상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도 우리나라보다 4배 이상 높고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2배에 가깝다. 따라서 배우자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적용요건인 공제대상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정부양공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생 연령대의 자녀를 둔

세대의 교육관련 지출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9세부터 22세까지의 부양친족이 취학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특히 우리 청년들의 경우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범위를 20세 이하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30세 정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우리의 경우에도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등 모든 기업에 대하여 양육과 일의 양립지원 및 여성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급여등지급증가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비율을 5% 추가조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N분N승 방식은 전후 저출산 대책으로 1946년 프랑스에서 도입돼 출산율을 높이는데 일정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진 제도이다. 자녀가 많은 기혼자부부에게 조세경감효과가 크게 나타나므로 경감한도액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출산에 대한 유인효과가 큰 프랑스식의 N분N승제(가족계수제)로의 제도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세제혜택을 완화하면서도 저출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선택적 2분2승제, N분N승제 등 과세단위에 대한 연구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일본은 아동 · 육아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제 공하는 일정한 고정자산 · 부동산 · 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 · 도시계획세, 부동산 취득세, 사업소세 등을 비과세하고 있다. 우리도 어린이 집 등 시설위주의 지원에 서 아동 · 육아관련 사업에 제공하는 고정자산 등으로 확대하여 지방세를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그간 출산장려정책에 사용된 자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앞으로 저출 산 대책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규모 등을 파악하여 이를 조달하는 방안에 대한 국 민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 주제어: 합계출산율,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상속시정산과세제도, 배우자공제, 특정부양공제, 양육과 일 양립지원, N분N승 방식

# 1. 머리말

토머스 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는 1798년 '인구론'을 통해 인구와 식 량의 불균형을 주장하며 인구 억제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1803년 '인구론'의 두 번째 판에서는 예방적 인구억제책의 일환으로 만혼(postponed marriage) 등 을 설파하였다.<sup>1)</sup> 당시로서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방책의 하나로 제시되었으 나 출산율 하락이 지속되는 작금의 한국과 일본의 사정과는 사뭇 다른 먼 나라의 이야기이다.

일본의 합계출산율<sup>21</sup>은 1974년 2.05명으로 흔히 인구 대체 마지노선으로 불리워지는 2.1명을 약간 밑돌다가 소위 1990년 '1.57쇼크'<sup>9</sup>를 계기로 저출 산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2005년에 1.26명까지 하 락하다가 2016년에 1.47명으로 약간 상승하였지만 그 뒤로 계속 하락하여 2022년 1.26명으로 낮아지는 등 2022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 1.51명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 2023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전년대비 0.06명이 낮아진 1.20명이고, 2023년 전국 출생아수는 727,277명으 로 전년대비 5.6%(43.482명)나 감소하였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sup>1)</sup> Donald Rutherford, Malthus and Three Approaches to Solving the Population Problem, Population Vol.62 No.2, Institut National d'Etudes Démographiques, 2007. 2., p.218; 이흥탁, "맬더스(Malthus)와 그의 人口論:歷史的 再照明", 『한국인구학회지』 제8권 제2호, 한국인구학회, 1985, 33~36면.

<sup>2)</sup> 가임(可妊)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sup>3) 1990</sup>년에 1989년의 합계출산율이 1.57명이었던 것이 공표되어 '히노에우마(ひの 호 う ま)'[병오(년) : 이 해에는 화재가 많고, 또 이 해에 출생한 여자는 남편을 단 명하게 한다는 등의 미신이 있음]의 미신에 의한 출산연기로 전후 최저를 기록했 던 1966년의 1.58명을 밑돈 것에 대한 사회의 충격을 나타낸다.

2.06명으로 2.1명을 밑돌다가 1984년 1.74명을 시작으로 2018년 이후에는 1명을 넘기지 못하는 등 40년째 저출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022년에는 0.78명으로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최근 2023년에는 0.72명으로 낮아지고, 전국 출생아수는 230,028명으로 전년대비 7.7%(19,158명)나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출생아 수가 감소될 경우 총인구 감소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학령인구 등이 감소되어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등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의 존립 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의 족쇄로 작용할 것이며, 연금·의료·간병 등 사회보장 수혜자와 부담자 간 불균형을 야기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경우에 비추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정책당국이 유념하여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세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머리말에 이어 제Ⅱ장에서 일본의 저출산 원인 및 대책을, 제Ⅲ장에서 일본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제Ⅳ장에서 일본의 저출산 극복 세제의 시사점을 도출한 후 제Ⅴ장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 개편방안을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sup>4)</sup> 한국 통계청, "2023년 출생통계", 2024. 8. 28. 보도자료, 30면.

# Ⅲ. 일본의 저출산 원인 및 대책

# 1. 저출사 현황

# 가. 출생아수

2023년 출생아수는 72만 7.277명으로 전년의 77만 759명보다 4만 3.482명 감소해 출산율(인구 천명당)은 6.0으로 전년의 6.3보다 떨어졌다. 출생수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49년의 269만 6.638명을 정점으로 1975년 이후에는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면서 감소 경향이 계속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5년만 에 증가했지만 2016년부터 다시 감소하고 있다. 5 첫 아이 출생시 모친 평균 연령은 2015년부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가 6년만인 2021년에 상승하고 2023년은 31.0세로 2년만에 재상승했다.

#### 나. 합계출산율

2023년 합계출산율은 1.20명으로 전년 1.26명보다 낮아졌다. 연도별 추이 를 보면 2006년부터 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2014년에 낮아지고 2015년에 재상승 후 2016년부터는 다시 낮아지고 있다. 합계출산율 내역을 어머니 연령(5세 구간)별로 보면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연령 구간은 30~ 34세로 나타났다. 도도부현별로 보면 오키나와현(1.60명), 미야자키현(1.49명), 나가사키현(1.49명)이 높고, 도쿄도(0.99명)가 가장 낮다.

<sup>5)</sup> 日本 厚生労働省、"令和5年(2023) 人口動態統計月報年計(概数)の概況"、 2024.6.5.,4頁.

<sup>6)</sup> 上揭 資料, 6頁.

# 다. 사망자수

2023년 사망자수는 157만 5,936명으로 전년의 156만 9,050명보다 6,886명 증가했다. 사망자수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83년 이후부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 2003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 서고 있다. 2020년은 11년 만에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로 돌아서 2022년에 이어 2023년도에는 150만명대가 되었다. 7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자수는 1980년대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전체 사망자수의 70%를 넘고 있다.

# 라. 혼 인

2023년 혼인 건수는 47만 4,717쌍으로 전년의 50만 4,930쌍보다 3만 213 쌍이 감소하여 혼인율(인구 천명당)은 3.9로 전년의 4.1보다 낮아졌다. 혼인 건수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72년 109만 9,984쌍을 정점으로 1975년 이후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2019년에 7년만, 2022년에 3년만에 잠시 증가가 있었지만 감소추세를 꺾지 못하고 있다. 평균 초혼연 령은 1995년에는 남성 28.5세, 여성 26.3세였으나, 2023년에는 남성 31.1세, 여성 29.7세로, 1995년 대비 남성 2.6세, 여성 3.4세가 높아졌으며 부부 모두 전년과 같은 연령이다.8

# 마. 이 혼

2023년 이혼건수는 18만 3,808쌍으로 전년도 17만 9,099쌍보다 4,709쌍이 증가해, 이혼율(인구 천명당)은 1.52로, 전년의 1.47보다 상승했다. 이혼 건수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64년 이후 매년 증가를 계속했지만, 1984년부터는 감소했다. 1989년에 들어 다시 증가 경향에 있었으나 2002년의 28만 9,836쌍을 정점으로 감소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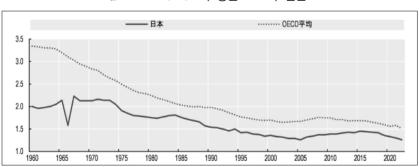
<sup>7)</sup> 日本 厚生労働省, 前揭 資料, 8頁.

<sup>8)</sup> 上揭 資料, 14~15頁.

#### 바. 합계출산율의 국제 비교

2022년 일본의 출생아수는 770,759명으로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은 1.26명인데, OECD 평균 1.51명을 밑돌고 있다. OECD 평균은 1960년부터 2002년까지 계속 낮아지고 있고, 2000년대에는 2008년까지 약간의 회복을 보였으나 2002년에는 TFR이 사상 최저 수준인 1.5명까지 떨어졌다. 일본의 TFR은 1960년 이래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다. 2005년 1.26명으로 떨어졌다가 이후 소폭 회복되었으나 2022년에는 다시 2005년 수준으로 낮아졌다. 1960년부터 2022년까지 일본 TFR과 OECD의 평균 TFR를 비교하면 <그림 2-1>과 같다. 10

일본에서는 출산 시 산모의 평균 연령이 2000년 29.6세에서 2022년에는 32.2세로 상승하여 OECD 평균을 약 1세 상회하고 있다. TFR의 저하는 여성이 가진 자녀수의 감소 또는 자녀를 전혀 갖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일본에서는 생애무자녀율이 1955년생 여성은 12%였는데, 1975년생 여성은 28%로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이다.



<그림 2-1> OECD의 평균 TFR과 일본 TFR

<sup>9)</sup> 日本 厚生労働省, 前揭 資料, 16頁.

<sup>10)</sup> OECD, "Society at a Glance 2024—Country Notes: 日本", 2024.6.20., <a href="https://www.oecd.org/ja/publications/society-at-a-glance-2024-country-notes\_fd5558c7-en/f929edaa-ja.html(검색일: 2024.9.26.).">2024.9.26.</a>)

그리고 2022년의 경우 OECD 회원국 평균 TFR 1.51명보다 높은 국가를 보면 이스라엘 2.89. 멕시코 1.82. 프랑스 1.79. 콜럼비아 1.72(2021). 아일랜드 1.70, 미국 1.67, 뉴질랜드 1.66, 호주 1.63, 튀르키예 1.62, 체코 1.62, 아이슬 란드 1,59, 슬로바키아 1,57, 덴마크 1.55, 슬로베니아 1.55, 칠레 1.54(2021), 코스타리카 1.53(2021), 벨기에 1.53, 영국 1.53(2021), 스웨덴 1.52, 헝가리 1.52 등 20개국이다.

평균보다 낮은 나라는 네덜란드 1.48, 리트비아 1.47, 독일 1.46, 포르투갈 1.43. 에스토니아 1.41. 노르웨이 1.41. 오스트리아 1.41. 스위스 1.39. 캐나다 1.33, 핀란드 1.32, 그리스 1.32, 룩셈부르크 1.31, 리투아니아 1.27, 폴란드 1.26, 일본 1.26, 이탈리아 1.24, 스페인 1.16, 한국 0.78 이다. 한국이 가장 낮 으며 일본도 하위 4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110

# 2. 저출산 원인

#### 가. 개 관

2005년 이후 출생아수 감소는 인구요인, 즉 과거의 저출산 영향으로 여성 인구 자체가 감소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결 혼감소 요인도 1990년대 이후 계속해서 저출산 하향 조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부부의 출산감소 요인은 2015년 이후 최근 5년간 출산율 하락의 원인 이 되고 있다. 즉, 2015년부터 2020년에 걸친 출생아수 감소는 여성인구의 감소, 비혼화의 진행 및 부부의 출산율 저하 등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진행되 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인구의 감소는 과거의 저출산 결과로 나타나고 있 는 것이며, 당분간 하향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결혼감소와 부부의 출산감소는 현 사회 · 경제환경의 변화에 의해 반전시키는 것도 전 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12 따라서 이하에서는 결혼감소와 부부의 출산감

<sup>11)</sup> 한국 통계청, 앞의 보도자료, 17면.

<sup>12)</sup> 日本 内閣府、『令和5年度 年次経済財政報告(経済財政政策担当大臣報告) — 動

14 稅務斗 會計 研究[通卷 第39號(第13卷 第4號)]

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나. 결혼의 감소

연수입과 혼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30대 남성 중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연수입이 낮을수록 미혼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점으로 보아 경제상황이 혼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8세부터 34세까지의 미혼자 중 이성교제 상대가 없고 교제 상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무직 또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남성 쪽이 특히 높아 고용·소득 환경이 교제나 결혼 선호를 약화시키고 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젊은 층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은 혼인율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sup>13</sup>

# 다. 부부의 출산 감소

결혼한 부부의 경우 소득과 자녀를 둔 비율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자녀를 둔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저소득층[2019년의 경우남편의 연수입이 중앙치인 550만엔(5,043만원)<sup>14</sup>을 밑도는 계급]에서 크게 낮아지고 있다. 이는 경제상황이 자녀출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출생에 따른 금전적 부담으로는 넓은 거주 공간이 필요하게 됨에 따른 주택비

き始めた物価と賃金 一』, 令和5(2023)年 8月, 146頁.

<sup>13)</sup> 吉岡大樹 内閣府政策統括官, "少子化の要因とその対策 — 令和5(2023)年 度経済財政白書第2章より —", 『Economic&Social Research』No.42(2023年秋号), 内閣府経済社会総合研究所, 2023, 7頁.

<sup>14) 2024</sup>년 10월 21일자 '재정된 매매기준율'은 100엔 = 916.91원이다(<a href="http://www.smbs.biz/ExRate/TodayExRate.jsp">http://www.smbs.biz/ExRate/TodayExRate.jsp</a>). 이 기준율에 따르면 550엔은 5,043만 50원에 해당한다. 이하 이 기준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되 천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만원단위로 기재(이 경우는 5,043만원)하되 <표>의 엔화 금액은 <표>가 복잡하게 되는 점을 감안 본문의 엔화 금액만을 ( )에 원화 만원 단위로 기재하기로한다.

용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소도시에 비해 대도시에서는 소득이 증 가해도 특히 둘째 아이를 가지는 비율이 높아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진학에 따라 보조학습비를 포함한 교육비가 높아지는 반면, 세대주가 직장 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증가속도는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가계에 대한 경제적 지원강화와 더불어 보조학습비의 부담경감 등을 위한 공교육의 내실화도 중요하다.15 요컨대,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구조적인 임금인상 환경구축, 육아세대의 주택비용 · 교육비 부담 경감, 여성에게 편 중된 육아부담경감을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3. 저출산 대책

#### 가. 개 관

일본의 경우 1970년대 및 1980년대에는 TFR이 1.8명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1990년 이전에는 저출산문제가 크게 공론화되지 않았다.<sup>16)</sup> 그런데 1990년 이른바 '1.57쇼크'를 계기로 저출산이 정책과제로 인식되어 1994년 12월 엔젤플랜을 효시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2003년 법률 제133호)등에 근 거한 여러 대책이 강구되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과거 최저치인 2005년 의 1.26명에서 2015년에는 1.45명까지 회복되었지만, 2016년부터 다시 감소 로 돌아서게 되어 저출산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20명, 출생아도 역대 최소인 72만 7.277명(전년대비 4만 3.482 명 감소)이 되었다.

이러한 저출산의 진행 및 아동ㆍ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과제가 심화되 는 상황을 배경으로 2021년 12월 21일에 각의결정된 '아동정책의 새로운 추 진체제에 관한 기본방침'에서 아동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게 될 아동

<sup>15)</sup> 吉岡大樹 内閣府政策統括官, 前揭論文, 8頁.

<sup>16)</sup> 김범송, "출산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정책 비교연구 — 한·중·일 삼국을 중심 으로 --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99면.

가정청을 설치하고 정부 전체의 저출산 대책 및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관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아동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노력한다는 내용등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모든 세대(世代)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2021년 12월에 '전세대형(全世代型) 사회보장구축본부'가 내각에 설치되어 동 본부가 주최하는 '전세대형 사회보장구축회의'에서 사회보장 전반의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2022년 12월 16일에 '전세대형 사회보장구축회의 보고서'가 나왔다. 동 보고서에서 자녀・육아 지원을 충실히 하기 위한 개혁방향으로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중단없는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조기에 구축하고, 그 후 아동수당 확충 등에 대한 항구적인 재원확보방안과 아울러 검토해야 한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2023년 6월 13일에 각의결정된 '아동미래전략방침'에서 가속화 플랜[당시 시점에서는 3조엔(27조 5,073억원) 중반의 규모]과 그 재원 확보책의 골격, 아동·육아 예산을 갑절로 늘리기 위한 큰 틀 등을 제시하여 연말까지 구체화시키기로 하였다. 그 후 아동 미래전략회의 외에 아동가정청의 아동가정심의회를 비롯한 관계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같은 해 12월 22일에 위 전략방침의 내용(주로 가속화 플랜과 그 재원확보 방안 부분)을 보다 구체화한 '아동미래전략'이 각의결정되었다.

또한 아동미래전략의 각의결정과 같은 날에 2024년도 예산과 더불어 '아동대강' 및 '전세대형 사회보장 구축을 목표로 하는 개혁의 방향'도 각의결정되었다. 아동대강은 아동가정심의회의 2023년 12월 1일 답신을 바탕으로아동기본법(2022년 법률 제77호)에 의한 최초의 대강으로서 아동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 정도의 기본적인 방침이나 중요사항을 일원적으로 정하고 있다. 아동대강의 구체적인 대응시책은 '아동중심실행계획'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sup>17</sup> 이하에서는 최근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아동

<sup>17)</sup> 柳瀬翔央, "次元の異なる少子化対策の実現に向けたこども未来戦略 — こ

일본 저출산 극복 세제의 시사점을 통한 우리나라 세제 개편방안 연구 17 가정청의 설립, 아동중심실행계획 및 아동육아지원법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나. 아동가정청 설립

### (1) 개 요

'아동가정청'은 여러 부처에서 실시되고 있는 아동정책을 일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사령탑 기능을 담당할 목적으로 2023년 4월에 내각부의 외국(外局)으로 신설되었다. 아동가정청의 발족에 의해 아동정책에 관한 종합조정권한이 일원화됨으로써 아동과 가정의 복지·보건, 그 외의 지원, 연령이나 제도의 벽을 극복한 중단없는 지원 등, 아동·육아에 관한 당사자입장에 선 포괄적인 정책 전개가 기대된다.<sup>18</sup> 2023년 12월 22일 아동기본법에 따라 아동대강이 각의결정되었으며, 이는 아동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이나 중요사항 등을 일원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대략 5년 후에 재검토하게 된다.

#### (2) 조직과 주된 사무

아동가정청의 조직은 장관관방, 아동성육(成育)국 및 아동지원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관관방은 아동정책의 기획 입안, 종합조정, 정보발신, 홍보, 증거에 입각한 정책 입안 등을 담당한다. 그리고 아동성육국은 ① 임신·출산 지원, 모자보건, 성육의료 등, ② 취학 전 모든 아동의 성장 보증(보육원, 인정어린이집 등), ③ 상담대응 및 정보제공의 내실화, 모든 아동의 보금자리조성, ④ 아동의 안전(성적 피해방지, 사고방지·예방 등) 업무를, 아동지원국은 ①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나 가정에 대한 끊임없는 포괄적

ども家庭庁の主な施策・予算及び財源確保策 —",『立法と調査』No.463, 参議 院事務局企画調整室, 2024. 2., 50~51頁.

<sup>18) &</sup>lt;a href="https://www.city.shiogama.miyagi.jp/uploaded/attachment/20159.pdf">https://www.city.shiogama.miyagi.jp/uploaded/attachment/20159.pdf</a>(검색일: 2024. 9. 25.).

지원(지역 지원 네트워크 구축, 아동학대 방지, 집단 따돌림 방지 및 등교거부 대책), ② 사회적 양호의 충실 및 자립 지원, ③ 아동 빈곤대책, 한부모가정 지원, ④ 장애아 지원업무 등을 각각 담당한다.

# 다. 아동중심행동계획

#### (1) 아동대강의 기본방침

2024년 5월 아동정책추진회의는 아동기본법에 따른 아동대강(2023년 12월 22일 각의결정)에 나타난 6가지 기본방침 및 중요사항을 기반으로 추진해 나갈 폭넓은 아동정책에 대한 일원적인 첫 액션플랜을 마련하였다.

우선 아동대상의 6가지 기본방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아동·청년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그 다양한 인격·개성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여 아동·청년의 현재와 앞으로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한다. ② 아동이나 청년, 육아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해 그 의견을 듣고 대화하면서 함께 진행해간다. ③ 아동이나 청년, 육아 당사자의 라이프 스테이지에 따라 끊임없이 대응하고 충분히 지원한다. ④ 양호한 성육환경을 확보하여 빈곤과 격차해소를 도모하고, 모든 아동·청년이 행복한 상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청년세대의 생활 기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다양한 가치관·사고방식을 대전제로 하여 청년세대의 입장에 서서 결혼, 육아에 관한 희망의 형성과 실현을 막는 애로요인을 타파하는데 힘을 쏟는다. ⑥ 시책의 종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계 부처, 지방공공단체, 민간단체 등과의 제휴를 중시한다. 그리고 아동시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라이프 스테이지별 중요사항, 육아 당사자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들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라이프 스테이지별 중요사항

라이프 스테이지별 중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9</sup> 아이의 탄생 전

<sup>19)</sup> こども政策推進会議,『こどもまんなか実行計画2024』, 令和6(2024)年 5月, 49~

부터 유아기까지는 출산에 관한 지원 등을 한층 더 강화,<sup>20</sup> 산전산후 지원의 충실화와 체제 강화, 영유아 건강검진 등의 추진, '첫 100개월의 성장 비전'을 바탕으로 한 대응 추진, 유아교육·보육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한다. 학령 기·사춘기에는 학교 내 근로방식의 개혁 및 처우개선, 지도·운영체제의 내실화, 보금자리 마련, 괴롭힘 방지대책 강화, 등교거부 아동의 지원체제 정비·강화, 교칙 개정, 체벌 및 부적절한 지도방지 등에 중점을 둔다. 청년 기에는 고등교육의 내실화, 청년에 대한 취직지원, '임금인상'을 위한 대처,

# (3) 육아 당사자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육아 당사자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으로는 고등교육비 부담 경감, 아동수당 확충 등 육아나 교육에 관한 경제적 부담의 경감, 지역육아지원·가정교육지원,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 지원, 유연한 근로방식 추진, 장시간 노동 시정 등 맞벌이·공동육아 추진 및 남성의 가사·육아에 대한 주체적인 참여촉진·확대, 부모·자녀 교류·양육비 확보 등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들고 있다.<sup>21)</sup>

그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아기부터 고등교육 단계까지 끊임없는 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아교육·보육 무상화를 실시한다. 즉, 2019년 10월부터 3~5세 어린이집 등의 이용료 무상화를 실시하고 0~2세에 대해서는 주민세 비과세 세대를 대상으로 무상화를 실시하고 있다.<sup>22</sup>

그리고 고등교육의 수학지원신제도 등에 의한 교육비 부담경감을 차질없

결혼지원 등이다.

<sup>78</sup>頁 參照.

<sup>20)</sup> 출산비용(정상분만) 보험적용 도입 검토: 2023년 4월부터 출산육아 일시금을 대폭 인상하였으며[42만엔(385만원)→50만엔(458만원)], 출산비용의 가시화에 대해 2024년도 실시를 위한 구체화를 추진한다. 이러한 대응을 실시한 후에 다음 단계의 대응으로 2026년도를 목표로 출산비용(정상분만)의 보험적용 도입을 포함하여 출산에 관한 지원 등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sup>21)</sup> こども政策推進会議, 前掲書 79~86頁 参照.

<sup>22)</sup> 上揭書, 79頁.

이 실시한다. 급부형 장학금과 수업료 등 감면에 대해서 2024년도부터 다자 너 가구나 이공농계 학생 등의 중간층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대여형 장학금의 감액반환제도를 재검토하는 것 외에 수업료 후불제도에 대해 대학원 석사단계에 도입한 후, 학부단계까지 본격 도입을 위해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한다. 또한 2025년도부터 자녀 3명 이상을 부양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학생 등에 대해서는 소득제한을 두지 않고 국가가 정하는 일정 금액까지 수업료・입학금을 무상으로 하고 대상학생의 학업요건에 대하여 필요한 재검토를 행한다.<sup>201</sup> 또한 아동수당을 확충한다. 아동미래전략에서 제시된 '아동・육아지원 가속화 플랜'에 따라 소득제한을 철폐하는 등 근본적 확충을 2024년 10월부터 실시한다.<sup>201</sup>

#### 라. 아동육아지원법 등의 개정

# (1) 개정 취지

아동미래전략(2023년 12월 22일 각의 결정)의 '가속화 플랜'에 포함된 시책을 착실하게 실행하기 위해 라이프 스테이지를 통한 육아와 관련된 경제적 지원의 강화, 모든 아동·육아세대를 대상으로 지원의 확충, 맞벌이·공동육아의 추진에 이바지하는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동시에 아동·육아정책의 전체상과 비용부담의 가시화를 추진하기 위한 아동·육아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아동수당 등에 충당하기 위한 아동·육아지원 금제도를 새로이 마련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25)</sup>

<sup>23)</sup> こども政策推進会議, 前掲書, 79頁.

<sup>24)</sup> 上揭書, 80頁.

<sup>25)</sup> こども家庭庁長官官房総務課 支援金制度等準備室, "子ども・子育て支援 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について", 令和6(2024)年 3月 14日, 1頁.

### (2) '가속화 플랜'의 구체적인 시책

#### (가) 라이프 스테이지를 통한 육아관련 경제적 지원 강화

① 아동수당의 경우 지급기간을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연령대까지로 하고, 지급요건 중 소득제한을 철폐하며, 3자녀부터는 지급액을 월 3만엔(27만원)으로 하며, 지급월을 연3회에서 격월(짝수달)로 하여 연6회 지급하는 근본적 확충을 실시한다. 이는 아동수당법의 개정사항이다. ② 임신기 부담 경감을 위해 임산부를 위한 지원급부를 신설하고, 해당 급부와 임산부 등 포괄상담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한다. 이는 아동육아지원법에 관한 내용이다.

#### (나) 모든 아동·육아가구에 대한 지원 확충

① 임산부를 위한 지원급부와 함께 임산부 등에 대한 상담지원사업(임산부 등 포괄상담지원사업)을 신설한다. ② 어린이집 등에 다니지 않는 만3세 미만 아동의 통원을 위한 급부(모든아동 통원제도)를 신설한다. ③ 산후조리사업을 지역아동육아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계획적인 공급체제를 정비한다. ④ 교육·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사업자에게 경영정보 등의 보고를 의무화한다(경영정보의 계속적인 공개화). ⑤ 시설형 급부비등 지급비용의 사업주 출연금의 충당상한비율의 인상, 출연금율의 법정 상한의 인하를 실시한다. ⑥ 아동부양수당의 셋째 자녀 이후 아동관련 가산액을 둘째 자녀의 가산액과 같은 금액으로 인상한다. ⑦ 가족돌봄아동을 국가·지방공공단체 등에 의한 아동·청년 지원대상으로 명기한다. ⑧ 기준에 미달하는 인가 외 보육시설의 무상화에 관한 한시적 조치의 기한도래에 대한 대응을 강구한다. 위 ①・②는 아동복지법, 아동육아지원법 등, ③~⑤는 아동육아지원법, ⑥은 아동부양수당법, ⑦은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 ⑧은 아동육아지원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 (다) 맞벌이·공동육아 추진

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출생 후 휴직지원급부 및

육아기에 단시간근무를 실시한 경우에 지급하는 육아시단<sup>20</sup>취업급부를 신설한다. 이는 고용보험법등의 개정내용이다. ② 자영업·프리랜서 등의 육아기간 중 경제적인 급부에 상당하는 지원조치로서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의 육아기간과 관련된 보험료 면제조치를 신설한다. 이는 국민연금법 개정내용이다.

#### (3) 아동 · 육아지원특별회계(이른바 "어린이금고")의 창설

아동·육아정책의 전체상과 비용부담의 가시화를 추진하기 위해 연금특별회계의 아동·육아지원계정 및 노동보험특별회계의 고용계정(육아휴업급부관계)을 통합하여 아동·육아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이는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이다.

# (4) 아동육아지원금제도의 창설

① 국가는 아동수당·임산부에 대한 지원급부, 3세 미만 아동의 통원을 위한 급부, 맞벌이·공동육아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의료보험자로부터 아동육아지원납부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하며, 금액의 산정방법, 징수방법, 사회보험진료보수 지급기금에 의한 징수사무 등을 정한다. ② 의료보험자가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에 납부금의 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아동육아지원금)을 포함하기로 하고, 의료보험제도의 취급을 토대로 한 피보험자 등에 대한 부과·징수 방법, 국민건강보험 등에서의 저소득자 경감조치 등을 정한다. ③ 세출개혁과 임금인상에 의하여 실질적인 사회보험부담 경감의 효과를 발생시키고, 그 범위 내에서 2026년도부터 2028년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각 연도의 납부금 총액을 정한다. ④ 2024년연도부터 2028년도까지의 각 연도에 한하여 아동수당·임산부에 대한 지원급부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아동 ·육아지원 특례공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한다. 위 ① ·④는 아동육아지원법, ②는 의료보험각법 등에 관한 개정사항이다.

<sup>26)</sup> 시단(時短)이란 노동시간단축(労働時間短縮)의 준말이다.

# Ⅲ. 일본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 1. 소 등 세

# 가. 부양공제

### (1) 제도의 개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배우자특별공제 및 부양공제 등 인적공제는 소득 중 본인 및 그 가족의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담세력 을 갖지 않는다는 이유에 근거한 것이고 일본 헌법 제25조의 생존권 보장을 조세법에서 구현한 것이다. 27 부양공제는 거주자가 공제대상 부양친족을 가 진 경우에 그 부양친족에 대해 일정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20로서, 이를 통해 거주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부양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친족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친족(배우자 제외)으로서 합계 소득금액이 연소득 48만엔(440만원) 이하(급여수입의 경우 연 103만엔(944만원) 이하]이고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 (2) 공제액

부양공제금액은 부양친족의 연령이나 동거 여부에 따라 <표 3-1>과 같이 달라진다.<sup>29)</sup>

<sup>27)</sup> 金子宏, 『租稅法』(第12版), 弘文堂, 2007, 168頁.

<sup>28)</sup> 일본 소득세법 제84조 제1항.

<sup>29)</sup> 일본 소득세법 제84조 제1항 및 조세특별조치법 제41조의16 제1항.

<표 3-1> 보양공제	그애

구 분		연령 요건 등	공제액
일반공제대상 부양친족		16세 이상 ~ 18세 이하인 자 23세 이상 ~ 69세 이하인 자	38만엔
특정부양친족		19세 이상 ~ 22세 이하 학생 등	63만엔
노인부양	동거노친 이외(별거)	70세 이상(별거)	48만엔
친족	동거노친	70세 이상(동거)	58만엔

#### (3) 저출산 대책과 아동수당 및 부양공제의 재검토

#### (가) 취 지

과거에는 16세 미만의 어린이도 부양공제대상이 되는 부양친족에 포함되었지만, 2011년의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면서 폐지되었다. 그런데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다음 세대를 짊어질 모든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초적인 경제지원으로서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해 ① 소득제한을 철폐하고, 전원을 급부대상으로 한다. ② 지급기간은 고등학생 연령대(18세에 달하는 날이후의 최초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자)까지 연장한다. ③ 다자녀 가산에 대해서는 아동 3명 이상 세대는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보다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3자녀 부터는 3만엔(28만원)으로 한다. 이상의 아동수당 확충을 2024년 10월부터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 국회에서 2024년 6월 12일법률 제47호로 마련되고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30

# (나) 주요 내용

당초 특정부양공제(추가부분)는 고등학생, 대학생 연령대의 자녀를 둔 세대의 교육관련 등의 지출 비율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세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16세부터 22세까지의 부양친족이 취학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었다. 이는 라이프 사이클로 보아 이와 같은

<sup>30) &</sup>lt;a href="https://www.sn-hoki.co.jp/article/pickup\_hourei/pickup\_hourei3664352/(검색일: 2024. 10. 20.)">https://www.sn-hoki.co.jp/article/pickup\_hourei/pickup\_hourei3664352/(검색일: 2024. 10. 20.)</a>.

부양친족을 가지는 중산층 세대의 세부담 경감을 한층 도모한 것이며, 구체적인 교육비에 주목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졌다. 2010년도 세제개정에서는 고등학교의 실질 무상화에 따라 특정부양공제의 추가부분[25만엔(229만원)]이 폐지되었다. 이번에 고교생 연령대는 양육세대에서 교육비 등의 지출이늘어나는 시기인 점에 비추어 2010년도에 폐지된 특정부양공제의 추가부분을 복원하기로 했다.<sup>31)</sup>

요컨대, 16세부터 18세까지의 부양공제에 대해 15세 이하의 취급과 균형을 도모하고, 고교생 연령대는 교육비 등의 지출증가시기인 점을 감안, 현행일반공제대상 부분[국세 38만엔(348만원), 지방세 33만엔(303만원)]에 대신해, 일찍이 고교 실질무상화에 따라 폐지된 특정부양친족에 대한 공제의 추가부분[국세 25만엔(229만원), 지방세 12만엔(110만원)]을 복원하고, 고교생 연령대에지급되는 아동수당과 합하여 모든 양육세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충하면서, 소득계층간 지원의 평준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32 이를 요약하면 <표 3-2>와 같다. 33

	그 분	0~2세	3~12세 <sup>i)</sup>	13~15세 <sup>ii)</sup>	16~18세 <sup>iv)</sup>	19~22세
아 동	2자녀 까지	1.5만엔/월	1만엔/월	1만엔/월	0→1만엔/월	없음
수 당	3자녀 이상	1.5 → 3만엔/월	1.5→3만엔/월	1→3만엔/월	0→3만엔/월	₩급

<표 3-2> 아동수당의 증액・연장과 부양공제의 축소

<sup>31)</sup> 高木夏子, "扶養控除をめぐる主な経緯と課題", 『立法と調査』No.467, 参議 院事務局企画調整室, 2024. 6. 27., 69~70頁.

<sup>32)</sup> 日本 財務省, "令和6年度税制改正の大綱の概要", <a href="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24/06taikou\_gaiyou.htm">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24/06taikou\_gaiyou.htm</a>(검색일: 2024. 9. 15.).

<sup>33) &</sup>lt;a href="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ba94b64b-731f-4f48-97ba-b54a76b0aeb6/9f6e535d/20240621\_councils\_shienkin-daijinkonwakai\_06.pdf(검색일: 2024. 10. 20);柳瀬翔央、前掲論文、56頁.

Ī	그 분	0~2세	3~12세 <sup>i)</sup>	13~15세 <sup>ii)</sup>	16~18세 <sup>ⅳ)</sup>	19~22세
	소득 제한	소득제한(약	면수 960만엔 미민	<u>ナ</u> ) <sup>iii)</sup> 철폐	소득제한 없음	
	지급 시기		연 3회(2, 6, 10월) → 연 6회(짝수월)			
부양	양공제		없음		소득세 38 → 25만엔 주민세 33 → 12만엔	소득세 63만엔 주민세 45만엔

주) i) 초등학교 수료까지임, ii) 중학생, iii) 연수(年收)·부부와 아동 2인 기준, 연수 1,200만엔(1억 1,002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만, 소득제한 이상은 당 분간 특별급부로 5,000엔(4.6만원) 지급, iv) 고교생 연령대(18세에 달한 후의 최초 연도말)까지임.

#### (다) 부양공제 적용 시기

16세부터 18세까지의 부양공제의 감소가 2025년도 세제개정에서 확정되 는 경우 2024년 10월부터 이루어지는 아동수당 지급기간 연장이 만 1년이 지난 후인 2026년분 이후의 소득세와 2027년도분 이후의 개인주민세에 적 용될 것이다.

#### (라) 효 과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부양공제 축소로 소득세 와 주민세 부담이 증가하겠지만, 아동수당 확충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서 실수령액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실수령액 증가는 부양공제 감 소액에 대한 누진세율의 적용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커질 것으로 예 상되며, 자녀 1명당 최대 12만엔(110만원) 증가한 반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혜택은 작아져 3.9만엔(35.8만원)까지 감소한다.<sup>34)</sup> 다만, 16~18세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므로 부양공제 감소에 따른 세금만큼

<sup>34)</sup> 日本 関係府省会議, "扶養控除等の見直しについて", https://www.cas.go.jp/jp/ seisaku/fuyoukoujo/dai1/siryou.pdf, 2024. 2., 3~6頁.

일본 저출산 극복 세제의 시사점을 통한 우리나라 세제 개편방안 연구 27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저출산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나. 배우자공제 및 배우자특별공제

# (1) 배우자공제

#### (가) 의의 및 적용요건

납세자에게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배우자공제라 한다. 여기서 공제대상 배우자란 그 해 12월 31일 현재 다음 4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다만, 2018년 이후에는 공제를 받는 납세자 본인의 합계소득금액이 1,000만엔(9,169만원)을 넘는 경우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i) 민법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일 것(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ii)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 할 것,(iii) 연간 합계소득금액이 48만엔(440만원) 이하[2019년분 이전에는 38만엔(348만원) 이하]일 것[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급여수입이 103만엔(944만원) 이하],(iv) 청색신고자의 사업전임자로서 그 해 내내 한 번도 급여지급을 받지 않을 것 또는 백색신고자의 사업전임자가 아닐 것 등이다. 500다. 500만 있는 경우에는 것 등이다. 500만 있는 것 등이다. 500만 있

#### (나) 배우자공제액

배우자공제액은 공제를 받는 납세자 본인의 합계소득금액 및 공제대상 배우자의 연령에 따라 다음 <표 3-3>과 같다.<sup>36)</sup>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외에 장애인공제 27만엔(248만원)[특별장애인의 경우는 40만엔(367만원), 동거 특별장애인의 경우는 75만엔(688만원)]을 공제할 수 있다.

<sup>35)</sup> 日本 国税庁, "No.1191 配偶者控除", <a href="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91.htm">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91.htm</a>(검색일: 2024. 9. 17.).

<sup>36)</sup> 일본 소득세법 제83조 제1항.

공제를 받는 납세자 본인의	공제액		
합계소득금액	일반공제대상배우자	노인공제대상배우자	
900만엔 이하	38만엔	48만엔	
900만엔 초과 950만엔 이하	26만엔	32만엔	
950만엔 초과 1,000만엔 이하	13만엔	16만엔	

#### <표 3-3> 배우자공제액

# (2) 배우자특별공제

#### (가) 의 의

배우자에게 48만엔(440만원)[2019년분 이전은 38만엔(348만원)]을 넘는 소득 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곳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을 때에도 배우자의 소득금 액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를 배우자특별 공제라고 한다. 또한 배우자특별공제는 부부 사이에는 서로 받을 수 없다.<sup>37)</sup>

#### (나) 적용요건

배우자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30 첫째, 공제를 받는 납 세자 본인의 해당 연도의 합계 소득금액이 1.000만엔(9.169만원) 이하여야 한 다. 둘째, 배우자가 다음 요건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 민법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이고, 공제를 받는 자와 생 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그 해에 청색신고자의 사업전임자로서의 급여를 지 급받지 않거나 백색신고자의 사업전임자가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연간 합 계소득금액이 48만엔(440만원) 초과 133만엔(1,219만원) 이하[2018년분부터 2019년분까지는 38만엔(348만원) 초과 123만엔(1,128만원) 이하, 2017년분까지는 38 만엔(348만원) 초과 76만엔(697만원) 미만1여야 한다. 셋째, 배우자가 배우자특 별공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넷째, 배우자가 급여소득자의 부양공

<sup>37)</sup> 日本 国税庁, "No.1195 配偶者特別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 taxanswer/shotoku/1195.htm(검색일: 2024. 9. 17.).

<sup>38)</sup> 일본 소득세법 제83조의2.

제등 신고서 또는 종된 급여에 대한 부양공제등 신고서에 기재된 원천공제 대상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로서 원천징수되지 않았어야 한다(배우자가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로 배우자 특별공제의 적용을 받지 않았을 경우 등을 제외한다). 다섯째, 배우자가 공적연금등 수급자의 부양친족등 신고서에 기재된 원천공제 대상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로서 원천징수되지 않았어야 한다(배우자가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로 배우자특별공제의 적용을 받지 않았을 경우 등을 제외한다).

# (다) 배우자특별공제액 배우자특별공제액은 다음 <표 3-4>와 같다.<sup>39)</sup>

<표 3-4> 배우자특별공제액

	공제액			
배우자의	거	주자의 합계소득금	 액	
합계소득금액	이어마에 이렇	900만엔 초과	950만엔 초과	
	900만엔 이하	950만엔 이하	1,000만엔 이하	
48만엔 초과 95만엔 이하	38만엔	26만엔	13만엔	
95만엔 초과 100만엔 이하	36만엔	24만엔	12만엔	
100만엔 초과 105만엔 이하	31만엔	21만엔	11만엔	
105만엔 초과 110만엔 이하	26만엔	18만엔	9만엔	
110만엔 초과 115만엔 이하	21만엔	14만엔	7만엔	
115만엔 초과 120만엔 이하	16만엔	11만엔	6만엔	
120만엔 초과 125만엔 이하	11만엔	8만엔	4만엔	
125만엔 초과 130만엔 이하	6만엔	4만엔	2만엔	
130만엔 초과 133만엔 이하	3만엔	2만엔	1만엔	

<sup>39)</sup> 일본 소득세법 제83조의2 제1항.

# (3) 배우자공제와 배우자특별공제의 차이

배우자특별공제와 배우자공제의 큰 차이는 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다. 배우자특별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합계소득금액이 48만엔(440만원) 초과 133만엔(1,219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한편,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소득이 48만엔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배우자특별공제와 배우자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적용요건도 있다. '공제를 받는 납세자 본인의 소득 합계액이 1,000만엔(9,169만원) 이하', '민법상 배우자', '배우자가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을 것', '청색신고 또는 백색신고의 사업전임자가 아닐 것' 등이다.

#### 다. 출산관련비용의 의료비공제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그 밖의 친족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의료비공제라고 한다. 의료비공제액은 의료비 본인부담 합계액에서 보험금 등으로 보전되는 금액과 10만엔(92만원)[총소득금액이 200만엔(1,834만원) 미만인경우는 총소득금액의 5%]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200만엔을 한도로 한다.<sup>40</sup>

의료비 본인부담액 중 출산에 따른 일반적인 비용이 의료비공제의 대상이 되는지의 판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sup>41)</sup> 첫째, 의료비공제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임신으로 진단을 받은 후의 정기검진이나 검사 등의 비용, 통원비용<sup>42)</sup>은 물론 출산으로 입원할 때 전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택시를 이용한 경우 그 택시비 등을 들 수 있다.<sup>43)</sup> 둘

<sup>40)</sup> 일본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sup>41)</sup> 日本 国税庁, "No.1124 医療費控除の対象となる出産費用の具体例", <a href="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24.htm">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24.htm</a>(검색일: 2024. 9. 18.).; 일본 소득세법 제73조、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제73-3조・제73-7~9조.

<sup>42)</sup> 통원비용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없는 것이 많으나, 가계부 등에 기록하는 등 실제로 든 비용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둘 필요가 있다.

<sup>43)</sup> 친정에서 출산하기 위해 친정으로 귀성하는 교통비는 의료비공제대상이 되지

째, 병원에 대해 지불하는 입원 중의 식사비는 입원비용의 일부로 지출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의료비공제의 대상이 되나, 다른 곳에서 배달을 시키거나 외식을 한 것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셋째, 입원 시 잠옷이나 세면도구 등 개인용품을 구입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건강보험조합이나 공제조합 등에서 출산육아일시금이나 가족출산 육아일시금 또는 출산비나 배우자 출산비 등이 지급되므로 그 금액은 의료 비 공제액을 계산할 때 의료비에서 공제해야 한다. 한편, 출산 전후 일정기 간 동안 근무할 수 없는 것에 기인하여, 건강보험법등의 규정에 의해 지급 받는 출산수당금은 의료비를 보전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므로 의료비공제의 계산상 차감할 필요는 없다.

# 라. 주택차입금 등에 대한 소득세액 특별공제

# (1) 제도의 개요

최근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세대나 청년부부 세대의 주택취득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양육세대 등에 대한 주택론공제의 차입한도액을 추가하여 실시한다.<sup>44)</sup>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는 주택론공제 라고도 하며, 주택론을 이용하여 주택을 신축·취득 또는 증개축하는 경우에 매년 주택론 잔액의 0.7%를 최대 13년간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sup>45)</sup> 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과세총소득금액등의 5%[최고 9.75만엔(89.4만원)] 범위 내에서 다음 해의 개인주민세에서 공제된다.<sup>46)</sup>

않는다.

<sup>44) &</sup>lt;a href="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income/b05.htm">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income/b05.htm</a>(召색일: 2024. 9. 14.).; 日本 国土交通省, "報道発表資料:住宅ローン減税の制度内容が変更されます!~令和6年度税制改正における住宅関係税制のご案内~", 2023. 12. 22., 1頁.

<sup>45) &</sup>lt;a href="https://www.mlit.go.jp/jutakukentiku/house/jutakukentiku house\_tk2\_000017.html">https://www.mlit.go.jp/jutakukentiku/house/jutakukentiku house\_tk2\_000017.html</a> (검색일: 2024. 9. 14.).

<sup>46) &</sup>lt;a href="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income/b05.htm">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income/b05.htm</a>(검색일: 2024. 9. 14.).

# (2) 주택론공제의 적용요건

주택론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득, 거주, 주택 및 대출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sup>47</sup> 첫째, 소득요건이다. 주택론 감세를 받기 위해서는 그 해의 합계 소득금액이 2,000만엔(1억 8,338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주택 담보대출 감세를 신청하는 연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둘째, 거주요 건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하여 공제를 받는 그 해말까지 살고 있어야 한다. 셋째, 주택요건으로 주택의 바닥면적이 50㎡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1/2 이상이 자기거주용이어야 한다. 40㎡ 이상 50㎡ 미만의 소규모 거주용 가옥에 대해서는 2024년말까지 건축 확인이 필요하는 등특정 조건하에서 합계소득금액이 1,000만엔(9,169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기존주택인 중고주택은 등기부상 건축일자가 1982년 1월 1일 이후 이거나 신내진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증명된 가옥이어야 하며, 장기우량주택·저탄소주택·ZEH(Net Zero Energy House)수준 에너지절약주택 등 인정주택은 단열성능등급, 일차에너지 소비량 등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야한다. 그리고 동일 생계의 친족 등으로부터 구입한 것이 아닌 주택이어야한다. 넷째, 대출요건으로 대출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한다.

# (3) 주요 내용

개인으로서 40세 미만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자, 40세 이상이면서 40세 미만의 배우자가 있는 자 또는 19세 미만의 부양친족을 가진 자('특례대상 개인'이라 함)가 인정주택 등의 신축 등 또는 매입재판매 인정주택 등의 취득을 하고 그 인정주택 등의 신축 등을 한 인정주택 등(인정주택 등으로 간주되는 특례인정주택 등을 포함) 또는 매입재판매 인정주택등의 취득을 위한 가옥을 2024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자기 거주용으로 제공한경우(그 인정주택 등의 신축 등 또는 매입재판매 인정주택 등의 취득을 한 날부터

<sup>47) &</sup>lt;a href="https://www.mlit.go.jp/jutakukentiku/house/jutakukentiku\_house\_tk2\_000017.html">https://www.mlit.go.jp/jutakukentiku/house/jutakukentiku\_house\_tk2\_000017.html</a> (검색일: 2024. 9. 14.); <a href="https://www.matsuya-iedepa.jp/knowledge/22396p/(검색일: 2024. 9. 14.)">https://www.matsuya-iedepa.jp/knowledge/22396p/(검색일: 2024. 9. 14.)</a>.

6개월 이내에 자기거주용으로 제공한 경우에 한함)에 인정주택등의 주택론세액 공제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인정주택등의 차입한도액을 추가하는 특례가 마련되었다.49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 <표 3-5>와 같다.49

 구 분	주택환경성능 등		차입한도액 <sup>vi)</sup> (단위 : 만엔)		공제기간 및	바닥면적	
	1 12000 0			2024년 입주	2025년 입주	공제율	합계소득금액요건
		장기우량 •	양육세대등 <sup>v)</sup>	5,000	4.500		
		저탄소주택	기타 세대	4,500	4,500	13년간, 0.7% 50m'이상, 2,000 ※ 2024년말까지 확인을 받은	
매입 주	인정	인정 <b>ZEH수준에너지</b> 주택 절약주택 <sup>(ii)</sup>	양육세대등 <sup>v)</sup>	4,500	3,500		50㎡이사 2,000미년에
			기타 세대	3,500			※ 2024년말까지 건축
주택 <sup>i)</sup>		에너지절약	양육세대등 <sup>v)</sup>	/			확인을 받은 신축
		기준적합주택 <sup>iii)</sup>	기타세대	3,000	3,000		주택은 40 m² 이상,
	기타 주택iv)		v)	O <sub>ni)</sub>	0 <sub>vii)</sub>	-	1,000만엔 <sup>vii)</sup>
 기존	인정주택등		3,000	3,000	10년간,		
주택	기타 주택		2,000	2,000	0.7%		

<표 3-5> 주택차입금등 특별공제

- 주) i) 기존주택을 택지건물거래업자가 일정한 증개축 등을 한 후에 판매하는 거주용가 옥을 말한다.
  - ii) 일본주택성능표시기준에서 단열등 성능등급 5이상, 일차에너지 소비량 등급 6이 상 성능을 모두 가진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 iii) 일본주택성능표시기준에서 단열등 성능등급 4이상, 일차에너지 소비량 등급 4이 상 성능을 모두 가진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 iv) iii)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을 가리킨다.
  - v) ① 40세 미만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자, 40세 이상이면서 40세 미만의 배우자가 있는 자 또는 ② 19세 미만의 부양친족이 있는 자를 가리키며. ① 또는 ② 해당

<sup>48)</sup> 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24/explanation/PDF/p0009-0088.pdf, 16~17頁.

<sup>49)</sup> https://www.mlit.go.jp/jutakukentiku/house/jutakukentiku\_house\_tk2\_000017.html (검색일: 2024. 9. 15.); 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income/b05.htm (검색일: 2024. 9. 15.).

#### 34 稅務의 會計 研究[通卷 第39號(第13卷 第4號)]

여부는 2024년 12월 31일 시점의 현황에 따른다.

- vi) 주택론 감세의 대상이 되는 론의 연말잔고 상한액을 말한다.
- vii) 2024년 이후에 신축의 건축확인을 받은 iv)의 기타 주택은 주택론 감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23년말까지 신축의 건축확인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2024 년~2025년에 입주하는 경우 차입한도액 2,000만엔(1억 8,338만원), 공제기간 10년이 적용된다.
- viii) 양육세대등에게 편리성의 제고, 다양한 세대,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주택취득수요 에 대응하기 위하여 바닥면적요건을 합계소득금액 1,000만원(9,169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 40㎡로 완화한다.

#### (4) 동일본대지진 이재민 중 양육세대 등에 대한 소득세액 특별공제

특례대상개인에 해당하는 주택 이재민이 인정주택 등의 신축 등 또는 매입재판매인정주택 등의 취득을 하고 그 인정주택 등의 신축 등을 한 인정주택 등 또는 매입재판매인정주택등의 취득을 한 가옥을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신의 거주용으로 제공한 경우<sup>50</sup> '동일본 대지진의 이재민 등과 관련된 주택론세액공제 공제액과 관련된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의 차입한도액을 이재민 중 양육세대·청년부부세대에 대해서는 <표 3-6>과같이 추가된 금액인 5,000만엔(4억 5,846만원)으로 하고 적용율도 0.2% 높은 0.9%로 하는 특례가 마련되었다.<sup>51)</sup>

# <표 3-6> 동일본대지진 이재민 중 양육세대 등에 대한 주택차입금등 특별공제

주택	차입금한도액	적용율	공제기간
인정주택·특정에너지소비 성능향상 주택·에너지소비 성능 향상 주택	5,000만엔	0.9%	13년

<sup>50)</sup> 해당 인정주택 등의 신축 등 또는 매입 재판매 인정 주택 등의 취득을 한 날부 터 6월 이내에 자신의 거주용으로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

<sup>51)</sup> 日本 財務省, "租税特別措置法等 (所得税関係) の改正", <a href="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24/explanation/PDF/p0117-0316.pdf">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24/explanation/PDF/p0117-0316.pdf</a>, 173頁, 180頁; <a href="https://www.mlit.go.jp/jutakukentiku/house/jutakukentiku\_house\_tk2\_000017">https://www.mlit.go.jp/jutakukentiku/house/jutakukentiku\_house\_tk2\_000017</a>. html(검색일: 2024. 9. 15.).

# 2. 법 인 세

# 가, 급여 등의 지급액이 증가한 경우의 법인세액 특별공제제도

# (1) 제도의 개요

임금인상촉진세제에 대한 2024년 세제개정내용 취지를 살펴보면 「디플레 완전탈피를 위한 종합경제대책 (2023년 11월 2일 각의결정)에서 '임금인상촉 진세제는 고물가에 밑돌지 않는 임금인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구 체적으로는 지역의 양질의 고용을 지원하는 중견기업의 임금인상 환경을 정비한다는 관점에서 새롭게 '중격기업 범위'를 마련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동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적자 중소기업에도 임금인상을 뒷받침하는 관점 에서 5년간의 이월공제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세액공제비율 추가조치에 대 하여 단계적으로 7%까지 더 높은 계속고용자 급여 등 지급증가비율 요건 신설, 인적투자의 확대를 위하여 교육훈련비와 관련된 추가조치에 대한 증 가비율 요건의 완화, 또한 양육과 일의 양립지원 및 여성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비율 추가조치 등이 갓구되었다.50

#### (2) 주요 내용

급여 등의 지급액이 증가한 경우의 법인세액 특별공제제도를 대기업, 중 견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표 3−7>과 같다.<sup>50</sup> 그리 고 동 제도의 적용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이다.54)

<sup>52)</sup> 日本 財務省, "租税特別措置法等 (法人税関係) の改正", https://www.mof. 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24/explanation/PDF/p0382-0594.pdf, 435~436頁.

<sup>53)</sup> 日本 財務省、"令和6年度 税制改正 (案) のポイント"、2024年 2月、5頁 ;経済 産業省、"令和6年度(2024年度) 経済産業関係 税制改正について"、2023年12月、 8頁.

<sup>54)</sup>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42조의12의5 제1항 및 제2항.

대기업<sup>55</sup>은 고물가에 뒤지지 않는 임금 인상의 견인차이자 더 높은 임금 인상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3%의 임금인상률 요건은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7%까지 더 높은 임금인상률 요건을 새로이 마련한다. 다음으로 새롭게 중견기업의 범위(종래의 대기업 중 종업원수가 2,000명 이하의 기업)를 신설하여 지역에서 양질의 고용을 유지하는 중견기업에도 임금인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3% · 4%의 임금인상요건을 설정한다. 끝으로 임금인상의 저변을 한층 넓히기 위해 적자 중소기업<sup>55</sup>에게도 임금인상 인센티브가 되도록, 이월공제조치를 도입하되, 그 기간은 5년으로한다. 임금인상률 요건(1.5%, 2.5%) 및 공제율은 현행을 유지한다. 양육과 일의 양립지원 및 여성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 임금인상요건을 충족하고 플래티넘 글루밍 인증 등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5% 추가한다.

구 분	계속고용자 <sup>i)</sup> 급여총액 (전년대비)	세액 공제율 <sup>ii)</sup>	여성활동 · 양육지원 추가공제율	교육훈련비 <sup>vi)</sup> 추가공제율	합계공제율 (최대 : 35%~ 45%)	
대기업	+3~7%	10~25%	+5% <sup>iii)</sup>	+5%	20~35%	
중견기업	+3~4%	10~25%	+5% <sup>iv)</sup>	+5%	20~35%	
중소기업	+1.5~2.5%	15~30%	+5% <sup>v)</sup>	+10%	30~45%	

<표 3-7> 급여 등의 지급액 인상과 법인세액 특별공제제도

- 주) i) 계속고용자란 적용사업연도 및 전사업연도의 전월분의 급여등 지급을 받은 국내 고용자(고용보험의 일반피보험자에 한함)를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은 전고용자 (고용보험의 일반피보험자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국내고용자)의 급여총액의 인상율을 기준으로 한다.
  - ii) 세액공제액의 계산은 전고용자의 전사업연도에서 적용사업연도의 급여등지급증

<sup>55)</sup> 자본금 10억엔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1,000명 이상이거나 종업원수가 2,000명을 넘어야 한다.

<sup>56)</sup> 중소기업자등(자본금 1억엔 이하의 법인, 농업협동조합등) 또는 종업원수 1,000 명 이하의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일본 저출산 극복 세제의 시사점을 통한 우리나라 세제 개편방안 연구 37

가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제상한액은 법인세액등의 20%이다.

- iii) 플래티넘 글루밍(ブラチナくるみん) 또는 플래티넘 에루보시(ブラチナえるぼし) 인증을 받은 기업일 것. 글루밍이란 일과 양육 양립을 지원하거나 다양한 근로 조건, 환경조건 등에 적극적으로 힘쓰는 기업에 대하여 후생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에루보시는 여성의 활동 추진에 관한 상황 또는 대응이 우량한 기업에 대하여 후생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이다.
- iv) 플래티넘 글루밍 또는 에루보시 3단계 이상이다.
- v) 글루밍 또는 에루보시 2단계 이상이다.
- vi) 교육훈련비는 대·중견기업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 중소기업은 5% 증가를 요건으로 하며 그 밖에 추가요건으로 적용사업연도의 교육훈련비액이 적용사업 연도의 전고용자에 대한 급여총액의 0.05%이상인 경우에 적용가능하다.

### 나. 기업주도형 보육시설용 자산의 할증상각

기업주도형 보육시설용 자산의 할증상각제도는 개인 또는 법인이 기업주도형 보육시설용 자산의 취득 등을 하여 그 보육사업용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12%(건물 및 구축물에 대해서는 15%)의 할증상각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sup>57</sup>

이 기업주도형 보육사업은 2016년도에 신설된 이후 정부의 '육아안심 플랜'등에 근거해, 정원 11만명분의 수용처 정비를 하는데 기여를 해 왔다. 이와 같이 정원이 대체로 달성되었다는 점, 또한 후생노동성이 2022년 8월에 공표한 대기아동수가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22년도 이후에는 신규모집 및 정원증원은 실시하지 않는다.<sup>50</sup>

<sup>57)</sup>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0e073405-9b93-46cd-a5c5-2a84767be741/c7cb4bf3/20230929\_policies\_kokoseido\_law\_tsuuchi\_tsuuchi-h30-r04\_327.pdf(검색일: 2024. 9. 20.).

<sup>58) &</sup>lt;a href="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772297/www8.cao.go.jp/shoushi/shinseido/ryouritsu/about\_boshu.html">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772297/www8.cao.go.jp/shoushi/shinseido/ryouritsu/about\_boshu.html</a> (검색일: 2024. 9. 20.).

# 3. 소 비 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3년 6월 13일 '아동미래전략방침'이 각의결정 되고, 동 전략방침에서 가속화 플랜[이 시점에서는 3조엔(27조 5.073억원) 중반의 규모 소요]과 그 재원확보책의 골격, 아동 · 육아 예산의 두 배 증가를 위한 큰 틀 등을 제시하여 연말까지 구체화시키기로 하였다. 그런데 저출산대책에 드 는 비용인 3조엔 이상을 마련하기란 용이치 않다. 동 비용을 항구재원으로 충 당하지 않으면 저출산대책의 내용도 신뢰성을 잃게 된다. 50 이에 따라 재원확 보책으로 소비세의 인상, 60 사회보험료 인상 및 국채발행 등이 거론된다.

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에 따르면 소비세의 용도는 주로 사회보장 중에서 도 연금, 의료 · 개호 및 육아지원 등 저출산대책에 요하는 경비 등 네 가지 경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말하자면 사회보장목적세가 되고 있 다. 의 일본 정부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작된 소비세 인보이스(적격청구서) 제도 에 따라 늘어나는 소비세 세수를 저출산대책 확충에 활용할 방침이

<sup>59)</sup> 森信茂樹, "少子化対策の恒久財源、ベストミックスを考える——連載コラム 「税の交差点」第109回",2023. 6. 15.,https://www.tkfd.or.jp/research/detail.php?id=4290 (검색일 : 2024. 9. 21.).

<sup>60)</sup> 일본의 경우 그 간 일련의 증세과정(1988년 3%의 소비세 도입, 민주당의 2010년 소 비세 10% 인상안 표명 등)을 거치면서 일본의 정치가들 사이에서는 증세를 주장하 면 선거에서 패한다는 생각이 자리잡았고, 증세는 일본 정치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 운 과제가 되고 있다(정현숙, 『인구위기국가 일본』, 에피스테메, 2021.11., 280면).

<sup>61)</sup> 일본 소비세범 제1조 제2항(消費税の収入については、地方交付税法 (昭和 二十五年法律第二百十一号) 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ほか、毎年度、制度と して確立された年金、医療及び介護の社会保障給付並びに少子化に対処す るための施策に要する経費に充てるものとする。).

<sup>62)</sup> 佐藤主光, "少子化対策の財源をどうするか?", 2023. 9. 11., https://www.tkfd.or. ip/research/detail.php?id=4342(검색일: 2024. 9. 21.).

<sup>63)</sup> 인보이스 제도란 2023년 10월 1일부터 개시한 복수세율에 대응한 소비세 매입 세액 공제의 방식이다. 동 제도 도입 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다. 일본 재무부는 2019년 국회심의에서 인보이스제도 도입에 따른 세수증가가 연간 2,480억엔(2조 2,739억원)이 된다고 시산한 바 있다.<sup>64</sup> 기시다총리도 소비세 1%가 3조엔이므로 1%인상을 모두 저출산대책으로 환원하면 거시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sup>65</sup>

# 4. 상속세 및 증여세

# 가. 상속시정산과세제도

# (1) 제도의 목적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상속에 의한 다음 세대로의 자산 이전 시기가 종래보다 대폭 지연되고 있는 점, 고령자가 보유하는 자산의 유효 활용을 통해서 경제사회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는 사회적 요청을 근거로 생전증여에의한 자산 이전의 원활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도 세제개정에서 마련되었다.<sup>60</sup> 동 제도의 활용을 통하여 결혼 비용 확보는 물론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 (2) 주요 내용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18세 이상(2022년 3월 31일 이전에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는 20세 이상)의 자녀·손자에 대한 생전 증여에 대해 자녀·손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상속시정산과세제도의 주

요건을 충족시킨 적격 청구서(인보이스)의 발행·보존이 필요하게 되며, 소비세 면세사업자·과세사업자를 불문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sup>64)</sup> 日本經濟新聞, "インボイスによる消費税収増、少子化対策に活用", 2023年 12月11日,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116X50R11C23A2000000/(검색일: 2024. 9. 21.).

<sup>65)</sup> 森信茂樹, "少子化対策の恒久財源、ベストミックスを考える——連載コラム「税の交差点」第109回", 2023. 6. 15., <a href="https://www.tkfd.or.jp/research/detail.php?id=4290">https://www.tkfd.or.jp/research/detail.php?id=4290</a> (검색일: 2024. 9. 21.).

<sup>66)</sup> 일본 세무대학교, 『상속세법(기초편)』, 2024, 62면.

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증여시에는 증여재산에 대한 경감된 증여세를 납부하고, 이후 상속 시 그 증여재산과 기타 상속재산을 합한 가액으로 계산한 상속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정산한다. 즉, 2,500만엔(2억 2,923만원)의 특별공제가 있어 동일한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증여 한도액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 번 공제할 수 있으며, 2,500만엔까지의 증여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액이 2,500만엔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20%의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증여세는 상속 시 상속세액에서 차감되고 상속세액이 적을 경우 차액이 환급된다.<sup>67</sup>

#### (3) 새로운 상속시정산과세제도 도입

2024년 1월부터는 특별공제 2,500만엔과 별도로 연간 110만엔(1,009만원) 까지 기초공제가 허용되는 새로운 상속시정산과세제도가 시행된다. 즉, 특정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에 관한 그 연도분의 증여세 과세 가격에서 110만엔을 공제한다. <sup>60</sup> 상속시정산과세제도에서는 모든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해 상속세를 계산해야 했지만,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연 110만엔까지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할 필요가 없다.

# 나. 결혼·양육 자금의 일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1) 주요 내용

2015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수 증자·라 함)가 결혼·양육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sup>69</sup>과 일정한 계약(결혼·양육자금 관리계약)에 따라, 수증자의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 (·증여자·라 함)으로부터 ① 신탁수익권을 취득한 경우 ② 서면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금전을 은행 등에 예금한 경우 또는 ③ 서면에 의한 증여

<sup>67)</sup> 일본 상속세법 제21조의9 내지 제21조의18.

<sup>68)</sup> 일본 상속세법 제21조의11의2 제1항 및 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의3의2 제1항.

<sup>69)</sup> 금융기관 등이란 신탁회사(신탁은행), 은행 등 및 증권회사를 말한다.

에 의하여 취득한 금전 등으로 증권회사 등에서 유가증권을 구입한 경우(·결혼·양육자금 계좌의 개설 등'이라 함)에는 그 신탁수익권 또는 금전 등의 가액중 1,000만엔(9,169만원)까지의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가액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금융기관 등의 영업소 등에 결혼·양육자금 비과세 신고서의 제출등을 함으로써 증여세가 비과세된다.<sup>70</sup> 다만, 2019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신탁수익권 또는 금전 등에 대해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에 수증자의 소득세와 관련된 합계소득금액이 1,000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이 비과세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결혼·양육자금'이란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금전을 말한다." ① 결혼시 지출하는 혼례(결혼식 피로연 포함)에 필요한 비용, 주거에 필요한 비용 및 이사에 필요한 비용 가운데 일정 금액, ② 임신·출산에 필요한 비용, 자녀의 의료비 및 자녀의 보육료 가운데 일정 금액 등이다.

#### (2) 결혼·양육자금 관리계약기간 중 증여자의 사망

결혼·양육자금 관리계약기간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사망한 원인을 금융기관 등의 영업소 등에 신고해야 하며, 그 사망일의 비과 세출연액에서 결혼·육아자금 지출액[결혼시에 지출하는 금전에 대해서는 300만엔(2,751만원)을 한도로 함]을 공제한 잔액('관리잔액'이라 함)은 그 증여자로 부터 상속등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에 가산한다.<sup>72)</sup>

#### (3) 결혼·양육자금 관리계약의 종료

결혼·양육자금 계좌와 관련되는 계약인 관리계약은 ① 수증자가 50세에 달한 경우 ② 계좌의 잔고가 영(零)이 되고, 그 계좌에 관한 계약을 종료시

<sup>70)</sup> 日本 国税庁, "No.4511 直系尊属から結婚・子育て資金の一括贈与を受けた場合の非課税", <a href="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zoyo/4511.htm">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zoyo/4511.htm</a> (검색일: 2024. 9. 16.);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의2의3.

<sup>71)</sup> 일본 세무대학교, 앞의 책, 62면.

<sup>72) &</sup>lt;a href="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zoyo/4511.htm">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zoyo/4511.htm</a>(검색일: 2024. 9. 16.).

키는 합의가 있는 경우 ③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 종료된다. ① 또는 ②의 사유에 해당하여 관리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비과세출연액에서 결혼·양육자금 지출액을 공제(상속 등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 관리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잔액도 공제한다)한 잔액이 있을 때는 그 잔액은 그 계약종료시에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수증자의 증여세 과세가격에 산입된다. ③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sup>79</sup>

### 다. 교육자금의 일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2013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사이에 수증자(교육자금관리계 약<sup>74</sup>을 체결하는 날에 30세 미만인 자에 한한다)가 교육자금<sup>75</sup>에 충당하기

<sup>73)</sup>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zoyo/4511.htm(검색일: 2024. 9. 16.).

<sup>74) 「</sup>교육자금 관리계약」이란 수증자의 교육에 필요한 교육자금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다음의 것을 말한다(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의2의 2 제2항). (1)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수탁자 간의 신탁에 관한 계약으로, ① 신탁의 주된 목적이 교육자금 관리일 것, ② 신탁재산이 금전 등에 한정될 것, ③ 수증자를 신탁이익의 전부에 대한 수익자로 할 것, ④ 기타 일정한 사항이 정해져 있을 것 (2) 수증자와 은행 등 간에 보통예금 또는 저금 등에 관한 계약으로, ① 교육자금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금 또는 저금을 인출한 경우 수증자는 은행 등에 교육자금 지출에 충당한 금전과 관련된 영수증 등을 제출할 것, ② 기타 일정한 사항이 정해져 있을 것. (3) 수증자와 금융상품거래업자 간의 유가증권 보관 위탁에 관한 계약으로, ① 교육자금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유가증권의 양도, 상환 등에 의해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증자는 금융상품거래업자에게 교육자금 지출에 충당한 금전과 관련된 영수증 등을 제출할 것, ② 기타 일정한 사항이 정해져 있을 것.

<sup>75) 「</sup>교육자금」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의2의2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4의3 제6항 내지 제8항). (1) 학교 등에 직접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금전 가. 입학금, 수업료, 입학료, 보육료, 시설설비비 또는 입학(원)시험의 검정료 등 나. 학용품 구입비, 수학여행비, 학교급식비 등 학교 등의 교육에 따른 필요한 비용 (2) 학교 등 이외에 대해 직접 지출되는 금전으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3) 교육(학원·주판 등)에 관한 역무 제공의 대가나 시설 사용료 등 (4) 스포츠(수영·야구 등) 또는 문화예술에 관한 활

위하여 금융기관 등과의 일정한 계약에 따라 수증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① 신탁수익권을 부여받은 경우 ② 서면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금전을 은행 등에 예치한 경우 또는 ③ 서면에 의한 증여로 취득한 금전 등으로 증권회사 등에서 유가증권을 구입한 경우(①~③의 경우를 '교육자금계좌의 개설 등'이라함)에는, 이들 신탁수익권 또는 금전 등의 가액 중 1,500만엔[(1억3,754만원), 학교 등 이외에 지출하는 금전에 대해서는 500만엔(4,585만원)]까지의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가액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등의 영업소 등을 경유하여 교육자금 비과세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증여세가 비과세된다.<sup>70</sup>

그 후, 수증자가 30세에 달하는 등 교육자금 계좌에 관한 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비과세출연액에서 교육자금지출액을 공제한 잔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잔액이 그 계약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해에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라. 주택취득등자금의 증여에 대한 비과세특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자신의 거주용으로 제공하는 주택용 가옥의 신축, 취득 또는 중·개축 등(이하 '신축 등'이라 함)의 대가로 충당하기 위한 금전(이하 '주택취득 등 자금'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는 비과세한도액까지의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비과세된다.<sup>70</sup>

동(피아노·회화 등) 기타 교양향상을 위한 활동과 관련된 지도에 대한 대가 등 (5) (3)의 역무 제공 또는 (4)의 지도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구입에 필요한 금전 (6) (2)에 충당하기 위한 금전으로, 학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7) 통학 정기권, 유학을 위한 도항비 등의 교통비. 여기서 '학교 등'이란 「학교교육법」에서 정한 유치원, 초·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전수학교, 각종학교, 일정한외국의 교육시설, 인정어린이집 또는 보육소 등을 말하며, 2019년 7월 1일 이후에 지출되는 상기  $(3)\sim(5)$ 의 금전으로 수증자가 23세에 달한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훈련급부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을 수강하기 위한 비용에 한한다.

<sup>76)</sup> 일본 조세특례조치법 제70조의2의2.

<sup>77)</sup> 일본 조세특례조치법 제70조의2의2 제17항.

#### 44 稅務와 會計 研究[通卷 第39號(第13卷 第4號)]

2024년도 세제개정으로 주택취득 등 자금과 관련된 증여세 비과세 조치의 적용기한이 3년간(2024~2026년) 연장되었다. 비과세한도액 1,000만엔 (9,169만원)이 적용되는 '양질의 주택요건'은 신축주택의 에너지절약 성능요건을 ZEH수준[단열 등 성능등급 5이상(결로발생 방지대책에 관한 기준 제외) 동시에 1차 에너지 소비량 등급 6이상]으로 한다.

## 5. 지 방 세

#### 가. 비과세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고정자산세 등 2024년 지방세세제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79</sup> 아동복지시설용으로 제공하는 일정한 고정자산·부동산·시설에 추가하여 양부모지원센터용으로 제공하는 고정자산·부동산·시설도 각각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부동산 취득세, 사업소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용으로 제공하는 일정한 고정자산·부동산·시설에 더하여 임산부 등 생활원조사업, 육아세대 방문지원사업 및 아동육성지원거점사업 등에 제공하는 고정자산·부동산·시설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 후에 행해진 아동자립생활원조사업, 육아단기지원사업 등에 제공하는 일정한 고정자산·부동산·시설도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부동산 취득세, 사업소세를 비과세한다.

### 나. 보육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 (1) 과세표준의 특례 조치

2017년도 세제개정에서 기업주도형 보육사업 및 지역형 보육사업 중 가

<sup>78) &</sup>lt;a href="https://www.mlit.go.jp/jutakukentiku/house/jutakukentiku\_house\_tk2\_000018.html">https://www.mlit.go.jp/jutakukentiku/house/jutakukentiku\_house\_tk2\_000018.html</a> (검색일: 2024. 9. 17.).

<sup>79) &</sup>lt;a href="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24/06taikou\_02.htm">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24/06taikou\_02.htm</a>(검색일: 2024, 10, 28.).

정적 보육사업, 주택방문형 보육사업 및 사업소 내 보육사업에 관련되는 고 정자산세·도시계획세(이하 '고정자산세 등'이라 함)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가격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3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정촌이 조례로 정한다.<sup>80</sup>

#### (2) 기업주도형 보육사업

기업주도형 보육사업(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의 운영관련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해당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토지, 가옥 및 상각자산에 관련되는 고정자산세 등을 특례조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토지, 가옥 및 상각자산을 유상으로 빌린 경우는 제외된다. 그리고 특례조치 대상기간은 지원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의 1월 1일을 부과기일로 하는 연도부터 최대 5년간이다.

### (3) 지역형 보육사업

지역형 보육사업으로는 가정적 보육사업, 주택방문형 보육사업, 사업소내 보육사업, 소규모보육사업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정적 보육사업, 주 택방문형 보육사업 및 사업소 내 보육사업(이용정원이 5명 이하인 경우에 한 함)에서는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자가 직접 해당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옥 및 상각자산에 관한 고정자산세 등을 특례조치의 대 상으로 하고 있다.

2014년도 및 2015년도 세제 개정에서 사업소 내 보육사업(이용정원 6명 이상) 및 소규모 보육사업(이용정원 6명 이상 19명 이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토지, 가옥 및 상각자산에 관한 고정자산세 등이 비과세된다.

# (4) 특정사업소 내 보육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 등 특례조치 폐지

아동육아지원법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은 자가 일정한 보육시설(특정사업소 내 보육시설)용으로 제공하는 고정자산과 관련된 고정자산세 등의 과세

<sup>80) &</sup>lt;a href="https://www.city.osaka.lg.jp/zaisei/page/0000421199.html">https://www.city.osaka.lg.jp/zaisei/page/0000421199.html</a>(검색일: 2024. 10. 29.).

표준 특례조치를 폐지한다.81)

다만, 2017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정부의 지원을 받은 자가 아동복지법상 시설(신고가 된 경우에 한함) 중 해당 정부가 지원한 '특정사업소 내 보육시설'과 관련된 사업소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 중 자산할 또는 종업원할의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는 사업소 바닥면적 또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해당 특정사업소내 보육시설과 관련된 사업소 등과 관련된 사업소 바닥면적 또는 종업원 급여총액에서 해당 특정사업소 내 보육시설과 관련된 사업소 바닥면적 또는 종업원 급여총액에서 해당 특정사업소 내 보육시설과 관련된 사업소 바닥면적 또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각각 4분의 3에 상당하는 면적 또는 금액을 공제한다.<sup>20</sup>

# Ⅳ. 일본의 저출산 극복 세제의 시사점

### 1. 일본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개편 논의사항

일본은 저출산의 진행에 의해 이미 인구감소 사회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력 인구의 감소, 사회보장의 부담 증가, 경제성장률의 저하, 가족 본연의 자세 변화 등 경제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세제분야에서도 결혼, 출산·자녀양육, 일과 가정양립 등에 관련된 다양한 세제상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N분N승 방식에 의한 과세논의, 급부부세액공제제도<sup>83</sup>의 제안, 저출산 대책에 대한 비용부담 논의, 소

<sup>81) &</sup>lt;a href="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24/06taikou\_02.htm">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24/06taikou\_02.htm</a>(검색일: 2024. 10. 29.).

<sup>82)</sup> 일본 지방세법 부칙 제33조 제6항.

<sup>83)</sup>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자녀장려세제 (CTC; Children Tax Credit) 등이 이에 해당한다.

득수준에 따른 취업조정문제, 세제와 사회보험제도와의 관계 등을 근거로 저출산사회에서의 세제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하 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저출산 극복 세제 중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 한 비교를 통하여 일본의 저출산 극복 세제 중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주는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일본과 한국의 저출산 극복 세제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 가. 소 득 세

#### (1) 비과세소득

한국과 일본의 육아·출산 등과 관련된 수당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소 득을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 <표 4-1>과 같다. 일본은 비과세되는 아동수 당의 지급대상이 고등학생 연령대인 18세까지로 우리나라보다 그 범위가 넓으며, 2자녀의 경우  $0\sim2$ 세까지는 월 1.5만엔(14만원), 3자녀 이상은 월 3만엔(28만원)으로 연령,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다.

#### <표 4-1> 비과세소득

구 분	일 본	한 국
	○ 출산수당금 <sup>&amp;)</sup> [지급개시일 이	○ 육아휴직급여, <sup>85)</sup> 육아기 근로
육아휴직수당	전 12개월간의 각 표준보수	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휴
드	월액을 평균한 금액 ÷ 30일	가급여, 육아휴직수당(월 150
	× (2/3)], 출산육아일시금(1명	만원 이하) <sup>86)</sup>

<sup>84)</sup> 지급요건으로는 근무처에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임신 4개월(85일) 이후의 출산으로 출산을 위한 휴직으로 급여지급을 받지 않아야 한다(https://www.obc.co. jp/360/list/post219, 검색일: 2024. 9. 25.).

<sup>85)</sup> 사용대상자는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이며, 지원금액은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이다.

구 분	일 본	한 국
	당 50만엔), <sup>87</sup> 육아휴직급부 금(육아휴직개시일로부터 180 일째까지는 휴직개시 시 임 금일액의 67%, 181일째 이후 에는 50%)	
아동수당 또는 출산·자녀 보육수당	<ul> <li>○ 아동수당<sup>®</sup>의 경우 소득제한</li> <li>은 철폐되며 지급대상이 고등</li> <li>학생 연령대까지로 2자녀까지는 월 1만엔 (0~2세는 1.5</li> <li>만엔), 3자녀 이상은 월 3만엔</li> </ul>	<ul> <li>출산·자녀보육수당(출산 또 는 6세 이하 자녀, 월 20만원 이하)<sup>89</sup></li> <li>* 아동수당(0∼8세 미만, 월 10만원) : 증여세 비과세<sup>90</sup></li> </ul>
베이비시터 이용료에 관한 조성 등	○ 보육을 주로 하는 국가나 지 방공공단체로부터의 베이비 시터 이용료 조성 등에 대하 여 육아지원의 관점에서 소 득세 비과세 <sup>91)</sup>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 : 증여세 비과세

<sup>86)</sup>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sup>87)</sup> 출산에 관한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의료보험(건강보험 등)에서 출산 시 일 정 금액이 지급되는 제도이다.

<sup>88)</sup> 日本 児童手当法 第十六条 租税その他の公課は、児童手当として支給を受けた金銭を標準として、課することができない。

<sup>89)</sup>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sup>90)</sup>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01, 2021.6.16.[「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받은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sup>91)</sup> 일본 소득세법 제9조 제16호.

#### (2) 소득공제

일본은 아동수당과 연계하여 부양공제제도가 마련되어 원칙적으로 아동수당을 받는 받지 않는 19세부터 22세까지에 대해서 부양공제를 하고 있다. 다만, 2024년 10월부터 16세부터 18세까지에도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부양공제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일부만 감액하고 있다. 그리고 배우자특별공제 및 출산관련비용의 의료비공제제도<sup>92</sup>를 두고 있다. 주택차입금 등특별공제는 2024년의 경우 양육세대를 우대하고 있다. 또한 주택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에 대하여 일정요건 하에 한국은 소득공제제도를, 일본은 소득세액 특별공제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표 4-2>와 같다.

일본의 배우자공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공제를 받는 납세자 본인의 합계소 득금액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예컨대 납세자 본인의 합계소득금액이 950만 엔(8,71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6만엔(238만원)부터 38만엔(348만원)을 받을 수 있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우리나라의 150만원보다 많다. 또한 공제대상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도 48만엔(440만원)[급여만 있는 경우 103만엔(944만원)] 이하로 우리나라의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보다 월등히 많다. 특히 배우자의 연간 합계소득금액이 48만엔을 초과하여 배우자공제를 받는 못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간 합계소득금액이 48만원 초과 133만엔(1,219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의 합계소득금액에 따라최소 1만엔(9만원)부터 38만엔(348만원)까지 배우자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표 4-2> 소득공제

구 분	일 본	한 국
인적공제	<ul> <li>○ 배우자공제<sup>80)</sup>: 13~38만엔</li> <li>○ 배우자특별공제<sup>84)</sup>: 1~38만엔</li> </ul>	○ 배우자공제 : 종합소득금액에 서 150만원 공제 <sup>55)</sup>

<sup>92)</sup> 일본은 소득공제되나 우리나라는 세액공제되므로 세액공제에서 비교설명하기로 한다.

<sup>93)</sup> 공제를 받는 납세자 본인의 합계소득금액이 1,000만엔(9,169만원) 이하이고 배우자의 그것이 48만엔(440만원)(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103만엔(944만원)) 이하

구 분	일 본	한 국
	○ 부양공제 : (16~18세) 25만엔, (19~22세) 63만엔	○ 부양가족공제(직계비속) : 종합 소득금액에서 1명당 150만원 공제 <sup>96)</sup>
물적공제	* 주택차입금등에 대한 소득세액 특별공제	○ 주택자금 소득공제 : Min(①, ②) ① Min[(주택청약저축의 납액액")

여야 한다.

- 94) 곳제를 받는 납세자 본인의 합계소득금액이 1,000만에 이하이고 배우자의 그것 이 48만엔초과 133만엔(1,219만원) 이하여야 한다.
- 95) 적용요건은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다.
- 96) 적용요건은 20세 이하의 자녀로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 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다.
- 97) 주택청약저축의 납입액 :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 소득자가 주택청약저축에 납입을 하면 2024년부터는 연 300만원까지 청약저축 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되 므로 청약저축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12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조세특 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 98)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을 말하 며, 이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된다(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 99)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이거나 1주택 세 대주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 하고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말하며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 우 소득공제된다(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 (3) 세액공제 및 자녀장려세제

일본의 경우 주택차입금의 0.7%를 세액공제하는 반면, 한국은 주택자금 소득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자녀·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및 자녀장려 세제가 마련되어 있다. 이를 요약하면 <표 4-3>과 같다. 특히 일본의 경 우 우리나라의 자녀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 등에 해당하는 급부부세액공제 제도의 도입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표 4-3> 세액공제 및 자녀장려세제

구 분	일 본	한 국
주택차입금등 소득세액 특별공제	○ 합계소득금액이 2천만엔이하의 자로서 19세 미만의 부양친족 이 있는 자 등 양육세대가 장기 우량주택ㆍ저탄소주택등을 신 축하는 경우에는 차입금한도액 (4천~5천만엔)의 0.7%를 13년 간 세액공제 적용	* 주택자금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_	<ul> <li>○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 + 연 30만원 × (공제대 상자녀수 - 2명)" 세액공제</li> <li>○ 해당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첫째 연 30만원, 둘째 연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 세 액공제</li> </ul>

<sup>100)</sup> 공제한도액은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인 경우는 2,0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경우는 1,800만원,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경우는 600만원이다(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구 분	일 본	한 국
교육비 세액공제	_	○ 공제율 15% - (한도) 영유아~고교생 연 300만원, 대학생 연 90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출산관련 비용의 의료비공제 (소득공제) — 의료비공제액 = 의료비 본인부담 합계액 — 보험금 등으로 보전되는 금액 — 10만엔)(총소득금액이 200 만엔 미만인 경우는 총소득금 액의 5%)	○ 공제율 15% — (한도) 자녀 등 연 700만원 (단, 6세 이하 자녀는 한도 제한이 없음) — 미숙아 등 의료비는 20%, 난 임시술비는 30% 공제
자녀장려세제	_	○ 연간소득이 7천만원 미만 가구,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불가

#### 나. 법인세

일본은 일과 양육의 양립이나 여성활동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급여 등 지급액을 일정비율(1.5~7%)인상하고, 일과 양육 양립을 지원하거나 다양한 근로조건, 환경조건 등에 적극적으로 힘쓰는 플래티넘 글루밍 기업 등으로 후생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여 등 지급증가액에 5%를 추가하여 공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추가 공제혜택이 없다. 이를 요약하면  $< \pm 4-4>$ 와 같다.

구 분	일 본	한 국
급여 등	○ 기업이 급여 등 지급액을 일정비	○ 중소기업 또는 증견기업이 근
지급액에 따른	율(대기업 3~7%, 중견기업 3~	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해
법인세액	4%, 중소기업 1.5~2.5%)인상한	당하는 경우 직전 3년 평균 초
특별공제	경우 급여등 지급증가액에 20~	과임금증가분에 대하여 중소기
(임금인상	45%(여성활동·양육지원 5% 포	업 20%, 증견기업 10% 만큼 세
촉진세제)	함)의 법인세액을 특별공제	액공제 <sup>101)</sup>

<표 4-4> 법인세액 특별공제

### 다. 상속세 및 증여세

일본은 결혼 · 양육자금, 교육자금 및 주택취득자금등의 일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제도와 증여세를 이연시키는 상속시정산과세제도를, 한국은 2024년부터 혼인 · 출산증여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를 비교하면 <표 4−5>와 같다.

우리의 혼인 · 출산증여재산 공제한도액 1억원에 비하여 일본은 결혼 · 양 육자금[1,000만엔(9,169만원)], 교육자금 1,500만엔(1억 3,754만원) 및 주택취득 자금(1.000만엔) 증여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은 2.500만엔(2억 2.923만원)까지의 증여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초과액 도 경감세율 20% 102가 적용되며 이후 상속 시 그 증여재산과 기타 상속재산 을 합한 가액으로 계산한 상속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정산하는 상속시정산과세제도를 두고 있는 등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 세제를 마련하 고 있다.

<sup>101)</sup>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sup>102)</sup> 일본의 증여세 최고세율은 3,000만엔(2억 7,507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 하는 55%이다(일본 상속세법 제21조의7).

### 54 稅務斗 會計 研究[通卷 第39號(第13卷 第4號)]

<표 4-5> 저출산 극복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구 분	일 본	한 국
결혼·양육지금 등의 일괄 중여에 대한 중여세 비과세	○ 결혼・양육 자금(1,000만엔)의 일 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교육자금(1,500만엔, 학교 등 이 외에 지출하는 금전은 500만엔) 의 일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비 과세 ○ 주택취득등자금(1,000만엔)의 증여에 대한 비과세특례	_
상속시정산 (과세제도)	○ 동일한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2,500만엔 특별공제까지의 증여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 증여액이 2,500만엔을 초과시 그 초과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20%의 증여세 과세  ─ 그 증여세는 상속시 상속세액에서 차감되고 상속세액이적을 경우 차액은 환급*** 기초공제 연간 110만엔 허용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000만원(미성년자가 증 여를 받는 경우 2,000만원)
혼인 · 출산 증여재산공제	_	<ul> <li>○ 증여자 : 직계존속</li> <li>─ 혼인증여재산공제 : 혼인신</li> <li>고일 전후 2년 이내</li> <li>출산증여재산공제 : 자녀의</li> <li>출생일부터 2년 이내</li> <li>○ 공제한도(혼인증여재산공제 + 출산증여재산공제) : 1억원</li> </ul>

#### 라. 지방세

일본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용, 사회복지사업용 등에 제공하는 일정한 고정자산·부동산·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부동산 취득세, 사업소세를 비과세하고 보육사업에 대하여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를 감면하고 있다. 한국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특히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한국에 비해 육아나 아동을 위한다양한 비과세제도를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일본에 비하여 감면제도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6> 저출산 극복관련 지방세

구 분	일 본	한 국
비과세	○ 아동복지시설용, 사회복지사업용, 임산부 등 생활원조사업 · 육아세대 방문지원사업 · 아동육성지원거점 사업, 아동자립생활원조사업 · 육아 단기지원사업 등에 제공하는 일정 한 고정자산 · 부동산 · 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 · 도시계획세, 부동산 취 득세, 사업소세를 비과세	○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 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 비과세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취 득세, <sup>103)</sup> 재산세 면제 <sup>104)</sup>
감면조치	<ul> <li>○ 보육사업에 대한 고정자산세, 도 시계획세 등 감면</li> <li>─ 다만, 정부의 지원을 받은 자가 특정사업소 내 보육시설용으로 제공하는 고정자산과 관련된</li> </ul>	<ul> <li>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sup>105</sup></li> <li>- 다자녀 가구차량 취득세 감면<sup>106</sup></li> <li>-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sup>107</sup></li> </ul>

<sup>103)</sup>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및 제19조의2.

<sup>104)</sup>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및 제19조의2.

<sup>105)</sup>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sup>106)</sup>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

-	
- h	h

구 분	일 본	한 국
	고정자산세 등의 과세표준 특 례조치 폐지	<ul> <li>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sup>100</sup> 등</li> </ul>

# 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 개편방안

## 1. 결혼·양육자금등의 일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우리나라 초저출산은 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취업 경쟁이 과거보다 심화 됨에 따라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 · 주거 · 양육측면의 불 안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난다.<sup>100</sup> 즉, 미혼, 무자녀인 이유로 '결혼하고 싶지 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취업, 생활안정, 집마련 문제 등)', '양육비용이 부담 되어서' 등 어려운 고용 · 주거 · 양육 여건을 1순위로 들고 있다. 따라서, 이 러한 기초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일본의 경우 와 같이 결혼 · 양육자금. 교육자금 및 주택취득자금등에 대한 지원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2024년에 도입된 혼인 · 출산증 여재산공제액을 통합한도 1억원에서 혼인, 출산 각각 1억원으로 하는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sup>107)</sup>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sup>108)</sup>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2.

<sup>109)</sup> 황인도 외 11인,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 책", 한국은행, 2023. 12. 1. 59면.

### 2. 상속시정산과세제도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18세 이상의 자녀·손자에 대한 생전 중여에 대해 자녀·손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일본의 상속시정 산과세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에 대한 경 감된 증여세를 납부하고, 이후 상속 시 그 증여재산과 기타 상속재산을 합한 가액으로 계산한 상속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정산한다. 즉, 2,500만엔(2억 2,923만원)의 특별공제가 있어 동일한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증여 한도액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 번 공제할 수 있으며, 2,500만엔까지의 증여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액이 2,500만엔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20%의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증여세는 상속시 상속세액에서 차감되고 상속세액이 적을 경우 차액이 환급된다. 2024년 1월부터는 특별공제 2,500만엔과 별도로 연간 110만엔(1,009만원)까지 기초 공제가 허용되는 새로운 상속시정산과세제도가 시행된다. 동 제도의 활용을 통하여 조기에 결혼비용 확보는 물론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110

## 3. 배우자공제 및 배우자특별공제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이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혼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일본의 배우자공제는 일률적으로 150만원이 지급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공제를 받는 납세자 본인의 합계소득

<sup>110)</sup> 일본의 경우 가계금융자산의 고령자 보유가 증가하고 있다. 시산(試算)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현재 가계금융자산[2,212조엔(2경 282조원)] 중 6할에 해당하는 약 1,400조엔(1경 2,837조원)을 60세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日本總研, 『Rearch Eye』 No.2024-056, 2024年 9月 27日.. 1頁).

금액에 따라 13만엔(119만원)부터 38만엔(348만원)에까지 차등지급된다. 배우 자공제 적용요건인 공제대상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도 48만엔(440만원) 이 하로 우리의 100만원보다 4배 이상이고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103만엔(944 만원) 이하로 우리의 500만원보다 2배에 가깝다. 배우자의 연간 합계소득금액이 48만엔 초과하여 배우자공제를 받는 못하는 경우에도 납세자 본인의합계소득금액에 따라 일정금액의 배우자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배우자공제액을 15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적용요건인 공제대상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4. 특정부양공제

특정부양공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생 연령대의 자녀를 둔 세대의 교육관계 등의 지출 비율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세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9세부터 22세까지의 부양친족이 취학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를 통하여 라이프 사이클로 보아 이와 같은 부양친족을 가지는 중산층 세대의 세부담 경감을 한층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청년들의 경우 군복무, 구직난 등으로 대학졸업 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범위를 20세 이하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30세 정도까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5. 임금인상촉진세제

우리의 경우에도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등 모든 기업에 대하여 양육과 일의 양립지원 및 여성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급여등 지급증가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비율 5% 추가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과 같이 일과 양육 양립을 지원하거나 다양한 근로조건, 환

일본 저출산 극복 세제의 시사점을 통한 우리나라 세제 개편방안 연구 59

경조건 등에 적극적으로 힘쓰는 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sup>111</sup>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6. N분N승 방식

일본 재무부장관은 N분N승 방식의 도입에 대하여 고소득자, 특히 외벌이 세대에 세제상의 큰 이익이 생긴다는 점, 가족 간에 서로의 소득을 분명히 한 후 공동신고의 필요성 여부를 정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지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sup>112</sup> 그 반면에 일정한 현역 육아세대에 세대단위 과세의 선택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세 과세단위를 혼인에 중립적인 개인단위주의에서 기혼자에게 유리한 2분2승제나 특히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는 N분N승제의 도입문제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sup>1130</sup> 2분2승제는 부부단위에서 소득을

<sup>111)</sup> 추가공제비율 5%가 적용되는 일본의 글루밍 주요 인증요건으로 풀타임 근로자 등의 법정 시간외·휴일 근로시간의 평균이 각 월 평균 45시간 미만이고월평균 법정 시간외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없을 것,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10% 이상일 것, 남성이 육아를 목적으로 한 휴가 사용률이 20% 이상일 것 등을 들 수 있다(https://www.mhlw.go.jp/content/11900000/01page1\_2.pdf, 검색일: 2024. 10. 20.).; https://www.mhlw.go.jp/content/11900000/03page8\_14kurumin.pdf, 검색일: 2024. 10. 20.).

<sup>112) &</sup>lt;a href="https://www.mof.go.jp/public relations/conference/my20230203.html">https://www.mof.go.jp/public relations/conference/my20230203.html</a>(검색일: 2024. 9. 26.) : 일본에서는 납세자 전체의 약 60%가 최저세율인 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이 층에 대한 혜택은 한정적인 반면,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고액 소득자에게 세제상 큰 이익을 주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고 한다. ; <a href="https://www.tkfd.or.jp/research/detail.php?id=4177">https://www.tkfd.or.jp/research/detail.php?id=4177</a>(검색일: 2024. 9. 26.).

<sup>113)</sup> 上西左大信, "所得税における課税単位のあり方 — 「所得合算・分割課税方式」の検討を中心に —", 『税研』 Vol.39 No.3, 日本税務研究センター, 2023年 9月, 42~43頁에 따르면 소득합산・분할과세방식의 문제점으로 독신

합산하고 다시 부부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으로 맞벌이 부부보다는 홑벌이 부부에 있어 세금절감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다만 가구의 사정에 따라 개인단위주의를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독일의 경우 개인단위주의와 2분2승제 중 선택하도록 하는 이른바 선택적 2분2승제을 도입하고 있으며, 세수의 급격한 감소를 막기 위하여 2분2승제의 적용에 따른 세액의 경감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다.<sup>114</sup>

이에 대하여 N분N승 방식은 전후 저출산 대책으로 1946년 프랑스에서 도입돼 출산율을 높이는데 일정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진 제도이다. 가구 합산소득을 가구 구성인원(N)으로 나눠 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다시 가구인원(N)을 곱해 납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프랑스에서는 가구원수로 어른은 1명분, 아이 2명까지는 각 0.5명분, 3명 이상에는 1명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갖는 인센티브를 높일 수 있다. 자녀가 많은 기혼자부부와 미망인 가족에게 조세경감효과가 크게 나타나므로 경감한도액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출산에 대한 유인효과가 더 큰 프랑스식의 N분N승제(가족계수제)로의 제도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15

#### 7. 지 방 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일본은 아동복지시설용, 사회복지사업용, 임산부 등 생활원조사업 · 육아세대 방문지원사업 · 아동육성지원거점사업, 아동자 립생활원조사업 · 육아단기지원사업 등 아동 · 육아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제공하는 일정한 고정자산 · 부동산 · 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 · 도시계획세.

자세대의 불이익, 고소득자세대의 우대, 맞벌이세대의 불이익, 세수의 감소, 사무부담의 증가 등을 들고 있다.

<sup>114)</sup> 이중교·이동식, "저출산 극복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사단법인 한국세 법학회, 2017. 9. 22., 89~93면.

<sup>115)</sup> 日本 税理士会連合会 税制審議会,"少子化社会における税制のあり方について― 令和5年度諮問に対する答申 ―", 2024. 3. 25., 8~9頁 参照.

일본 저출산 극복 세제의 시사점을 통한 우리나라 세제 개편방안 연구 61

부동산 취득세, 사업소세 등을 비과세하고 있다. 우리도 어린이 집 등 시설 위주의 지원에서 아동·육아관련 사업에 제공하는 고정자산 등으로 확대하 여 지방세를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8.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원확보

저출산대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소요되는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세출개혁을 우선한다고 하지만, 재검토하는 세출의 내용이 확실하지 않으며 세출개혁만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저출산대책 재원을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 법인세로 충당할 것인가, 어떠한 신세원을 발굴할 것인가, 사회보험료를 인상할 것인가,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할 것인가, 이들을 서로 어떻게 믹스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보장급부를 삭감할 것인가라는 국민의 선택만 남아있을 것으로 사료된다.<sup>116</sup>

# Ⅵ. 맺음말

저출산은 인구학적 요인과 함께 사회·경제적 요인, 문화·가치관 측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379.8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택, 양육, 교육, 세제 등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sup>116)</sup> 佐藤主光, "少子化に対する諸施策の現状と在り方", 『税研』 Vol.39 No.3, 日本稅務研究センター, 2023年 9月, 37頁.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도입되고 있 거나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세제 중 우리가 벤치마킹할 만한 제도를 중심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초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인 어려운 고용·주거·양육에 대한 기초적인 여건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일본의 경우와 같이 결혼·양육자금, 교육자금 및 주택취득자금등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2024년에 도입된 혼인·출산증여재 산공제액을 통합한도 1억원에서 혼인, 출산 각각 1억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18세 이상의 자녀·손자에 대한 생전증여에 대해 자녀·손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일본의 상속시정산과세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500만엔(2억 2,923만원)까지의 증여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액이 2,500만엔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해 경감세율 20%로 증여세가 부과되며, 그 증여세는 상속시 상속세액에서 차감되고 상속세액이 적을 경우 차액이 환급된다. 동 제도의 활용을 통하여 조기에 결혼비용 확보는 물론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이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혼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일본의 배우자공제는 일률적으로 150만원이 지급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공제를 받는 납세자 본인의합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적용요건인 공제대상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도 우리나라보다 4배 이상 높고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2배에 가깝다.배우자의 연간 합계소득금액이 48만엔(440만원) 초과하여 배우자공제를 받는 못하는 경우에도 납세자 본인의 합계소득금액에 따라 일정금액의 배우자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적용요건인 공제대상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정부양공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생 연령대의 자녀를 둔 세대의 교육관계 등의 지출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9세부터 22세까지의 부양친족이 취학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부양친족을 가지는 중산층 세대의 세부담 경감을 한층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의 경우군복무, 취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범위를 20세 이하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30세 정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우리의 경우에도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등 모든 기업에 대하여 양육과 일의 양립지원 및 여성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급여등지급증가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비율을 5% 추가조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N분N승 방식은 전후 저출산 대책으로 1946년 프랑스에서 도입돼 출산율을 높이는데 일정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진 제도이다. 프랑스에서는 가구원수로 어른은 1명분, 아이 2명까지는 각 0.5명분, 3명 이상에는 1명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자녀가 많은 기혼자부부에게 조세경감효과가 크게 나타나므로 경감한도액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출산에 대한 유인효과가 큰 프랑스식의 N분N승제(가족계수제)로의 제도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세제혜택을 완화하면서도 저출산 극복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선택적 2분2승제, N분N승제 등 과세단위에 대한 연구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일본은 아동복지시설용, 사회복지사업용, 임산부 등 생활원조사업·아동육성지원거점사업, 아동자립생활원조사업등 아동·육아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제공하는 일정한 고정자산·부동산·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부동산 취득세, 사업소세 등을 비과세하고 있다. 우리도 어린이 집 등 시설위주의 지원에서 아동·육아관련 사업에 제공하는 고정자산 등으로 확대하여 지방세를 경감하는 제도를

64 稅務斗 會計 研究[通卷 第39號(第13卷 第4號)]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그간 출산장려정책에 사용된 자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앞으로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규모 등을 파악하여 이를 조달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1. 단행본, 논문 및 기타자료
- 김범송, "출산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정책 비교연구 한·중·일 삼국을 중심으로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이중교·이동식, "저출산 극복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2017. 9. 22.
- 이흥탁, "맬더스(Malthus)와 그의 人口論:歷史的 再照明", 『한국인구학회지』 제8권 제2호, 한국인구학회, 1985.
- 정현숙, 『인구위기국가 일본』, 에피스테메, 2021.11.
- 황인도 외 11인,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한국은행, 2023. 12. 1.
- 한국 통계청, "2023년 출생통계", 2024. 8. 28.
- Donald Rutherford, Malthus and Three Approaches to Solving the Population Problem, *Population* Vol.62 No.2, Institut National d'Etudes Démographiques, 2007. 2.
- 吉岡大樹 内閣府政策統括官,"少子化の要因とその対策 令和5(2023)年度経済財政白書第2章より —", 『Economic&Social Research』No.42(2023年秋号), 内閣府経済社会総合研究所, 2023.
- 金子宏,『租稅法』(第12版), 弘文堂, 2007/
- 高木夏子,"扶養控除をめぐる主な経緯と課題",『立法と調査』No.467, 参議院事務局企画調整室、2024.6.27.
- 上西左大信, "所得税における課税単位のあり方 「所得合算・分割課税方式」 の検討を中心に —"、『稅研』Vol.39 No.3, 2023年 9月.
- 柳瀬翔央, " 次元の異なる少子化対策の実現に向けたこども未来戦略 こども 家庭庁の主な施策・予算及び財源確保策 —", 『立法と調査』No.463, 参議 院事務局企画調整室, 2024. 2.

- 佐藤主光,"少子化に対する諸施策の現状と在り方",『税研』Vol.39 No.3, 日本 税務研究センター, 2023年 9月.
- 日本 内閣府、『令和5年度 年次経済財政報告(経済財政政策担当大臣報告) 動き始めた物価と賃金 』、令和5(2023)年 8月.
- 日本 経済産業省, "令和6年度(2024年度) 経済産業関係 税制改正について", 2023年 12月.
- 日本 国土交通省, "報道発表資料: 住宅ローン減税の制度内容が変更されます! ~ 令和6年度税制改正における住宅関係税制のご案内~". 2023. 12. 22.
- 日本 税理士会連合会 税制審議会,"少子化社会における税制のあり方について一令和5年度諮問に対する答申 —", 2024. 3. 25.
- 日本 稅務大學校、『相續稅法(基礎編)』, 2024.
- 日本 財務省, "令和6年度 税制改正 (案) のポイント", 2024年 2月.
- 日本 總研, 『Rearch Eye』 No.2024-056, 2024年 9月 27日.
- 日本 厚生労働省, "令和5年(2023) 人口動態統計月報年計(概数)の概況", 2024. 6.5.
- こども家庭庁長官官房総務課 支援金制度等準備室,"子ども・子育て支援法 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について",令和6(2024)年 3月 14日.
- こども政策推進会議、『こどもまんなか実行計画2024』、令和6年 5月.

#### 2. Internet Website

https://en.wikipedia.org/wiki/Malthusianism.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772297/www8.cao.go.jp/shoushi/shinseido/ryouritsu/about\_boshu.html.

https://www.cas.go.jp/jp/seisaku/fuyoukoujo/dai1/siryou.pdf.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0e0734059b93-46cd-a5c5-2a84767be741/c7cb4bf3/20230929\_policies\_kokoseido\_law\_tsuuchi\_tsuuchi-h30-r04\_327.pdf.

https://www.city.shiogama.miyagi.jp/uploaded/attachment/20159.pdf.

https://www.matsuya-iedepa.jp/knowledge/22396p/.

https://www.mhlw.go.jp/content/11900000/01page1\_2.pdf.

https://www.mhlw.go.jp/content/11900000/03page8\_14kurumin.pdf.

https://www.mlit.go.jp/jutakukentiku/house/jutakukentiku house tk2 000017.html.

https://www.mlit.go.jp/jutakukentiku/house/jutakukentiku\_house\_tk2\_000018.html.

https://www.mof.go.jp/public\_relations/conference/my20230203.html.

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24/06taikou\_gaiyou.html.

 $\underline{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income/b05.html}.$ 

 $\frac{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24/explanation/PDF/p0009-0088.}{pdf}.$ 

 $\frac{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24/explanation/PDF/p0117-0316.}{pdf}.$ 

 $\frac{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24/explanation/PDF/p0382-0594.}{pdf.}$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116X50R11C23A2000000/.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24.htm.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75.htm.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91.htm.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95.htm.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zoyo/4511.htm.

 $\frac{https://www.oecd.org/ja/publications/society-at-a-glance-2024-country-notes\_fd5558c7-en/f929edaa-ja.html.$ 

https://www.sn-hoki.co.jp/article/pickup\_hourei/pickup\_hourei3664352/.

https://www.tkfd.or.jp/research/detail.php?id=4177.

https://www.tkfd.or.jp/research/detail.php?id=4290.

https://www.tkfd.or.jp/research/detail.php?id=4342.

#### < Abstract >

# A Study on the Tax Reform Plan in Korea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Japanese Tax System to Overcome Low Total Fertility Rate

Kim, Byung-Il\*

The low total fertility rate(FTR) is the result of a combination of various factors such as socio-economic factors and cultural and value aspects along with demographic factors. In the case of Korea, a whopping 380 trillion won is invested from 2006 to 2023, but there is no visible effect, such as a continuous decline in the FTR. Therefore, to increase the FTR, comprehensive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using various policy tools such as employment, housing, childcare, education, and tax systems.

As considered in this paper, the following are the tax systems being introduced or actively discussed in Japan to overcome low FTR, which our country could consider benchmarking.

First, in order to raise funds for basic conditions for employment, housing, and parenting, which are the biggest factors in Korea's ultra-low FTR, support for marriage and childcare, education and housing acquisition funds should be provided continuously, as in Japan. For us, the marriage and childbirth gift tax deduction introduced in 2024 should be increased from a combined limit of 100 million won to 100 million won for each marriage and childbirth separately.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Japan's inheritance settlement tax system, which can be used at the option of children and grandchildren over the age of 18 from parents or grandparents over the age of 60. This system does not impose gift tax on gifts up to 25 million yen. If the gift amount exceeds 25 million yen, a gift tax is levied on the excess at a reduced tax rate of 20%, and the gift tax is deducted from the inheritance tax at the time of inheritance, and if the inheritance tax amount is smaller, the difference is refunded. By utilizing this system, it is possible to secure marriage funds early and stimulate economic revitalization through increased consumption.

<sup>\* (</sup>Former) Kangnam University Professor, Ph.D. in Law

Thir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pecific support deduction system. This was designed to alleviate the tax burden on households with college-aged children, considering their high educational expenses. It applies to dependent relatives aged 19 to 22,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currently enrolled in school. In particular, as many of our young people are unable to become financially independent due to university enrollment, military service, or job searching, the age limit for dependent children eligible for basic deductions should not be restricted to under 20 years. Instead, it should be adjusted to around 30 years old if they are unemployed.

Fourth, Personal deductions such as spouse deductions are deducted from taxable income to exclude income corresponding to the minimum cost of living of taxpayers from taxation, and can be an incentive to marry if properly utilized. Unlike Korea, where 1.5 million won is uniformly paid, Japan's spouse deduction is paid differentially according to the total income of the taxpayer who receives the deduction, and the total income of the spouse subject to deduction, which is the requirement for application, is more than four times higher than that of Korea, and is close to twice as high even if there is only a salary. Even if the spouse's annual total income exceeds a certain amount and the spouse's special deduction is not received, the spouse's special deduction may be received according to the taxpayer's own total inco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ise a plan to gradually raise the spouse's deduction amount and gradually increase the annual income of the spouse subject to the deduction, which is a requirement.

Fifth, in our case,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n additional 5% tax credit on increased salary payments for all companies - large corporations, mid-sized enterprises, and small businesses - to actively support the balance between childcare and work, as well as promote women's activities.

Sixth, The N-division/N-multiplication method is a system introduced in France in 1946 as a post-war measure to address low FTR, and it is known to have had a certain effect in increasing FTR. In France, the N-division/N-multiplication method takes into account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dults count as one unit each, the first two children as 0.5 units each, and any additional children as one unit each. It creates a significant tax benefit for larger families, making it advantageous to have more children. For married couples with many children, significant tax relief is provided, and a reduction limit is set to adjust this. In our cas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mproving the system to the French-style N-division/N-multiplication method (family quotient system), which has a strong incentive effect on childbirth.

Seventh, Korea needs to introduce a system to reduce local taxes by expanding from facility-oriented support such as daycare centers to certain fixed assets, real estate, and facilities provided for children and childcare-related projects like Japan.

Eighth,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funds used for birth encouragement policies so far and to identify the specific budget required for future low birth rate measures. A national consensus on how to raise these funds should be reached.

► Key Words: total fertility rate, marriage and childbirth gift tax deduction, inheritance tax settlement tax system, spouse deductions, specific support deduction system, support the balance between childcare and work, N-division N-multiplication system